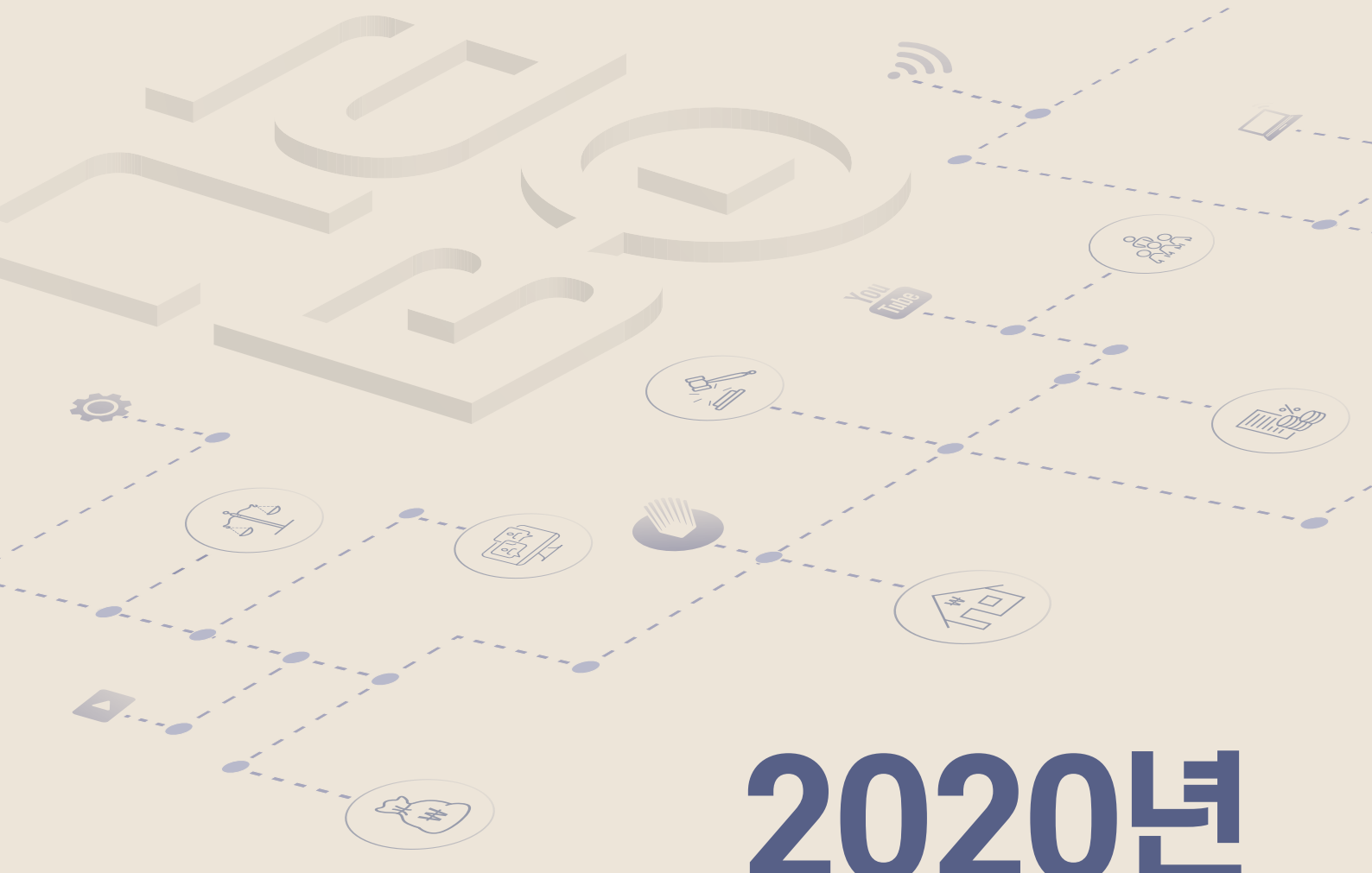




2020년 세법개정안 온라인 토론회

2020.11.9. | 월 | 14:00 - 16: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2020년 세법개정안 온라인 토론회

2020.11.9. | 월 | 14:00 - 16: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020년 세법개정안 온라인 토론회

2020.11.9. | 월 | 14:00 - 16: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1월 9일 「2020년 세법개정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방향 및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2020년 세법개정안 온라인 토론회



2020년 세법개정안 온라인 토론회

결과보고서

CONTENTS

개 회 식

축 사	윤후덕	국회기획재정위원장	...09
-----	-----	-----------	-------

발제 및 토론

발 제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13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29
토 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	...43
	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	...51
	용혜인	기본소득당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	...61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71
	박형수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77

회 의 록

...87

2020년 세법개정안 온라인 토론회

축사

윤후덕

국회기획재정위원장



개회식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윤후덕 의원입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를 준비하신 국회 예산정책처와 오늘 토론자로 함께 하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간사님, 류성걸 간사님, 용혜인 의원님 그리고 정세은 교수님과 박형수 원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특히 발제를 맡으신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님과 예산정책처 박명호 추계세제분석실장님께도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들이 수출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시켜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 전문가 여러분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경제 활성화와 펀더멘탈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세는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조세정책은 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가 무척 반갑습니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투자과 소비활성화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비롯해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여러 의미 있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세부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 서민에게 힘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 위한 법안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방향을 설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내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여러 의견들이 우리 위원회 세법개정안 심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토론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을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격려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 후 덕**

2020년 세법개정안 온라인 토론회

발제 1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발제 및 토론

2020년 세법개정안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1

CONTENTS

1. 추진과정 및 기본방향
2.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2-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
 - 2-2.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 2-3.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3.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2

추진과정 및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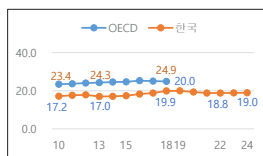
- 조세 정책 여건
- 추진과정
- 기본방향

3

조세 정책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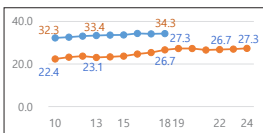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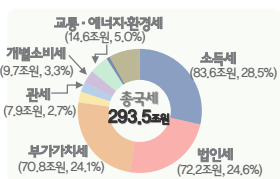
- '13년 이후 상승 → '19년 20.0% → '24년 19.0% 전망
- OECD 평균('18년, 24.9%)보다 낮은 수준

국민부담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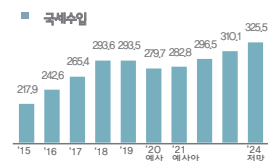
-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세목별 비중('19년 결산기준)



- 3대 세목 비중이 77%
- 세목별 비중은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순

국세수입 실적 및 전망(조원)



- '21년 국세수입 : 282.8조원 전망(예산안)

기획재정부 세제실

4

추진과정

정부정책 뒷받침

- '20년 경제정책방향('19.12월, '20.6월)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19.8월)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19.12월, '20.6,7월)

국민 의견 수렴

-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및 학계
- 세법개정 건의 약 1,400건 검토
- 8개 분야별 세제발전심의회(25회)
- 금융, 신탁 등 주요개정 과제 공청회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반영

- 일자리·투자 확대 및 혁신성장 촉진
-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 조세제도 합리화

코로나19 신속대응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소비진작 유도 위한 조특법 개정(3월, 4월)
- *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소규모 개인사업자 VAT경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기획재정부 세제실

5

기본방향

정책
목표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 기반 뒷받침

기본
방향

코로나19 피해극복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친화 환경조성

추진
전략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소비활력 제고

성장동력 강화

서민·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지원

과세형평 제고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편의 제고

기획재정부 세제실

6

2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
-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7

2-1.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

-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 소비활력 제고
-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8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

대상 자산 확대	포지티브 방식 → 네거티브 방식 [일반 사업용자산<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
투자증가 인센티브	기본공제 (대 1% / 중견 3% / 중소기업 10%) + 증가분 추가공제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3년 평균 투자액] × 3% (중기업))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투자 기본공제 2%p 우대 (대3%/중견5%/중소12%)

적용시기 :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년, '21년 투자분 : 기존·신설 제도 중 유리한 것 선택 가능)

[기업세제 개편]

- 당해연도에 결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조특법상의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5 → 10년
- 이중과세 조정 지원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5 → 10년
* 10년내 미공제 세액공제액은 손금산입 허용(現 소멸)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세부담 합리화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10 → 15년
* '20년 귀속 결손금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세제실

9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주류산업 규제 개선]

-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편의 제고, 납세협력비용 절감 위해 규제 개선

위탁제조(OEM) 허용	다른 업체의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 허용
맥주·탁주 가격신고 제외	종량제인 맥주 탁주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의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제조장 방문·외판·판매 면세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 방문 외국인 관광객 대상 판매 주류 주세 면제
'조미용' 주류 과세 제외	주세 과세대상 주류에서 '조미용' 주류 제외

[한국판 뉴딜 지원]

- SOC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모 인프라 펀드 세제지원 신설
* 배당소득 분리과세(14%, 1억원 한도) 특례 신설
- ※ 한국판 뉴딜 펀드 세제지원(9.3일 발표)은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안 발의
* 뉴딜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자본시장법상 펀드, 부동산 리츠 포함) 투자시
배당소득 분리과세(9%, 2억원 한도) 적용

기획재정부 세제실

10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

소비활력 제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 소비활성화 유도를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

총급여 기준	현행	개정안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천만원 ~ 1.2억원	250만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 공제율은 '20.상반기중 既往향('20.4~7월 사용액 15~40% → 80%)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 위해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 한도 390만원 : 개별소비세 300만원 + 교육세 90만원

※ [참고] '20.上 既往치 소비촉진 지원세제

- '20.4~7월 중 개인사업자·법인이 소상공인에게 선결제한 금액에 대해 1% 세액공제
- '20.3~6월 중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20.7월부터는 30% 인하)
- '20.3~7월 중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15~40% → 80%)
- '20년 기업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세제실

1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 선제적인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21년~) : △0.1%p

* '21년 △0.02%p(△0.5조원), '23년 △0.08%p(△1.9조원)

구분	현행	'21~'22년	'23년
코스피	0.1%	0.08%	0%
코스닥	0.25%	0.23%	0.15%
기 타	0.45%	0.43%	0.35%

* 코스피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 유지

- '금융투자소득 신설' 통해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분류과세('23년~)

*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공모형 주식 펀드 합산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원

* 손실공제 :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 5년 이월공제

* 세율 : 20%(단,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과세방법 : 반기별 원천징수/예정신고, 추가납부·환급세액은 5월말 신고·환급

기획재정부 세제실

12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신탁세제 개선]

-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 * (소득세·법인세) 수익자 과세 원칙,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 허용
 -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
-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제도 보완
 - * (중부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 →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과세
 - * (소득세·법인세)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위탁자에게 납세의무 부과
- 새로운 신탁제도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 (상속세)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시 상속세로 과세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 국내 증설복귀시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20.3월 8개 개정)
 - (5년간(수도권 3년) 소득세 법인세 100% + 추가2년 50% 감면) 적용
 - * 종전에는 국내 사업장 신설·창업하는 경우에만 유턴 복귀 인정
-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감축요건 폐지 + 해외생산량 감축수준 비례 세제지원
 - * 세액감면 대상소득 = 국내복귀소득 × min[1, (해외감축량/국내생산량)]

기획재정부 세제실

13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벤처기업 지원]

-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시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 벤처기업 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2년 연장
 - * VC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배당소득 법인세 비과세
 - * 개인이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시 소득세 비과세
 - * 개인이 벤처기업등에 투자(엔젤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100% 소득공제
 - * 개인이 벤처기업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기획재정부 세제실

14

2-2.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 서민·중소기업 지원
- 일자리 지원
- 과세형평 제고

15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서민·중소기업 지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 → 8,000만원으로 인상
 -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4,800만원 유지
 - * 간이과세자 23만명 증가(△2,800억원, 1인당 △117만원)
-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 → 4,800만원으로 인상
 - * 납부면제자 34만명 증가(△2,000억원, 1인당 △59만원)
- 매출 투명성 확보 위해 간이과세자로 신규 전환되는 사업자(4,800~8,000만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
 - *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0.5%) 신설
 - * 현행 제도 하의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선
 -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미적용
 - * 신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1% 공제를 적용(現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
 -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現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 改 매입액 × 0.5%)

기획재정부 세제실

16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서민·중소기업 지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가입대상 확대**,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등 요건 완화
 - *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 **19세 이상 거주자**
 - * (자산 운용범위) 예 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 **상장주식 추가**
 - * (계약기간) 5년(단축 또는 연장 불가) →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 자율 설정**(만기시 연장 허용)
 - * (납입한도 이월 허용) 납입한도(연 2천만원, 최대 1억원) 내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 허용**
 - * (적용기한 폐지) **항구적으로 세제지원**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개선]

-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을 과세관청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15일 이내**로 단축

[중소기업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 어려움 등 감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 **2년 연장**
 - * 중소기업으로서 46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를 **5~30% 세액감면**
-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2년 연장
 - *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 세액공제**

기획재정부 세제실

17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일자리 지원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

- (**근로소득중대세제**)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당해 연도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2년 연장**
-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시 **전환인원 1인당 1,000만원** 세액공제 **1년 연장**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년간 인건비 **10%·5% 세액공제 2년 연장**
- (**경력단절여성 고용**) 경력단절여성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고용 후 2년간 인건비 **30%·15% 세액공제 2년 연장**

[고령자에 대한 고용중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해 **고용중대세제 세액공제 우대대상**에 **60세 이상 근로자** 추가
 - * 1인당 세액공제액 **350~430만원** 인상 효과

(단위 : 만 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우대대상 상시근로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	1,100	1,200	800	400
기타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기획재정부 세제실

18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과세형평 제고

[소득세율]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45%로 상향 조정(1.6만명, +0.9조원)

과세표준 구간	현 행	개 정 안
1,200만원 이하	6%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8,800만원 ~ 1.5억원	35%	(좌 등)
1.5 ~ 3억원	38%	
3 ~ 5억원	40%	
5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2%	45%

* 우리나라와 경제규모(30~50클럽 3만불, 5천만명 이상)가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시 최고세율이 유사한 수준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	30-50평균	한국(개정안)
최고세율(%)	45.0	45.0	45.0	45.0	43.0	37.0	43.3	45.0
(지방세 포함)	55.9	55.4	47.5	45.0	47.2	43.7	49.1	49.5

기획재정부 세제실

19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과세형평 제고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감안해 기타소득으로 과세
 - (과세표준) 가상자산 소득금액 = 양도대가 - (취득가액 + 부대비용)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 (세율) 20%
 - (과세방법)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과세, 연1회 신고·납부
 - (비거주자 / 외국법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Min[양도가액 × 10%, 양도차익 × 20%])
 - (적용시기) '21.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

- 담배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니코틴 용액 1㎖당 370원 → 740원
 - (현행 세 부담)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0.7㎖) = 100 : 90 : 43.2
- '부리 줄기' 추출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

[기타]

-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초과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증여시 증여세 과세 강화(증여세, 소득세 모두 과세)
- 대규모 조합법인(매출액 1,00억원 또는 자산 5,000억원 초과)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제외

기획재정부 세제실

20

2-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조세제도 합리화
- 납세자 권익보호
- 납세 편의 제고

21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조세제도 합리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 법인 설립·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합리화

* (과세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 법인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 보유

*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text{배당간주금액} = \text{초과유보소득}(\text{유보소득} - \text{유보공제액}) \times \text{지분비율}$

*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 사업특성 등 감안하여 **유보소득 제외 항목**, **과세대상 제외 법인**을 **시행령**으로 규정

시행령 개정사항(안)

* (**유보소득 제외 항목**)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사용료 및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채권** 등의 처분수입(**수동적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예: 50%미만) 법인, 즉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부채상환·고용·R&D**를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

* (**적용대상 제외 법인**)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

기획재정부 세제실

22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조세제도 합리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시 추가 과세(20%)

㉠ 투자 포함형 : [소득의 65% - (투자+임금증가+상생금액)] × 20%

㉡ 투자 제외형 : [소득의 15% - (임금증가+상생금액)] × 20%

■ 투자 유인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수중립적으로 제도 재설계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 강화 : 당기 소득의 65% → 70%

* 추가 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1년 → 2년

*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 범위 합리화 7,000만원 이하 → 8,000만원 이하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 각 세법에서 달리 규정된 공익법인 관련 명칭을 “공익법인 등”으로 일원화

* (현행) 법정·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소득세법),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상증세법)

■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강화

*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대해 공익목적 사용 최소비율 상향 70% → 80%

*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경우 제재 강화(가산세 + (추가) 주식 5% 초과 보유분 증여세)

■ 일반/성실 공익법인으로 이원화된 사후관리를 일원화하는 등 사후관리 제재 합리화

■ 발행주식총수 5% 초과 보유 공익법인은 “매년”(현행 5년) 의무이행 여부 신고(미이행시 0.5% 가산세)

기획재정부 세제실

2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세무조사 사전·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

	현행	개정안
사전통지 항목	납세자 인적사항, 세무조사 기간, 대상세목 및 조사 사유	- 과세기간 추가
결과통지 항목	대상 세목, 과세기간, 과세 이유, 과세액, 불복 안내	- 과세이유 기재시 근거법령 및 구체적 사실 적시 - 가산세 종류·금액·산출근거 추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관세법」상 벌칙사유나 부당행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발급 허용

* (현행) 수입자의 착오·경미한 과실·無귀책의 경우에만 발급 허용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에 사립 초·중·고 운영 법인 추가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 정책 평가·연구 지원 등을 위해 국세청장이 소득세 표본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기초자료를 통계적 기법으로 표본 추출

기획재정부 세제실

24

3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25

세수효과



☑ 금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 향후 5년간 **+676억원**

* 부동산세제 개편(8.18일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포함

- **증가 요인** :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 1.5조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0.9조원) 등
소득세율 인상(+ 0.9조원) 등
- **감소 요인** :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2.4조원),
투자세액공제 확대(△ 0.5조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0.5조원) 등

기획재정부 세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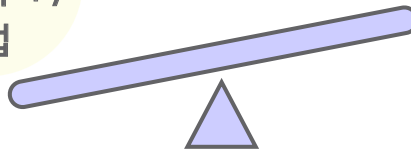
26

세 부담 귀착



1.9조원 ↑
고소득자 /
대기업

서민·중산층 /
중소기업
1.8조원 ↓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은 감소하고(△1.8조원),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은 증가(+1.9조원)

감 사 합 니 다.

2020년 세법개정안 온라인 토론회

발제2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발제 및 토론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

박명호

추계세제분석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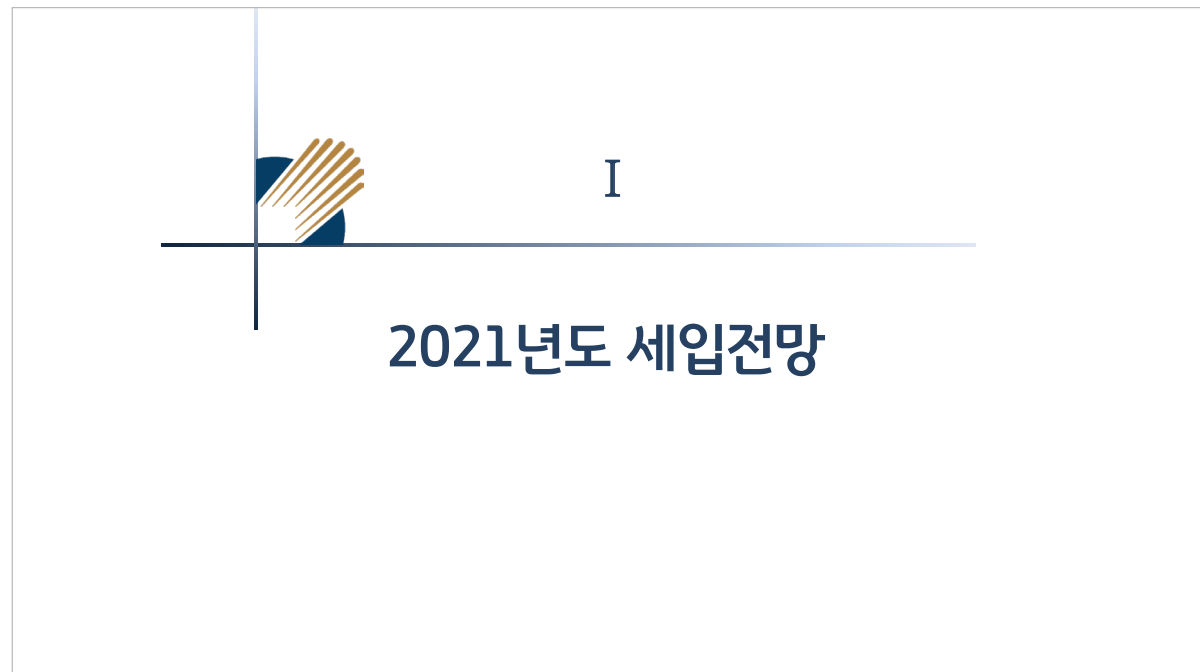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

Contents

I. 2021년도 세입전망

II.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

III. 향후 과제



I-1. 대내외 경제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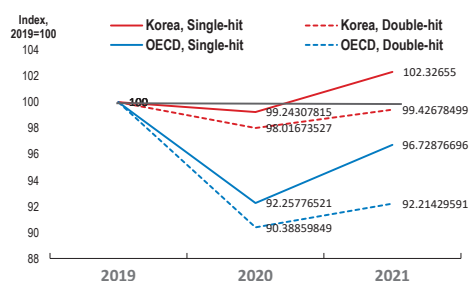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역성장 전망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경제성장률 전망 (%)

	2019	2020	2021
세계	2.8	-4.4	5.2
한국	2.0	-1.9	2.9
NABO		-1.6	2.3
한은		-1.3	2.8

자료: IMF(2020.10), NABO, 한국은행

OECD 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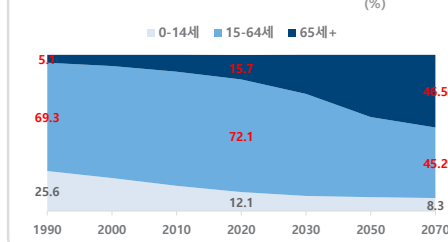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

I-2. 세입여건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장기적 세입여건은 악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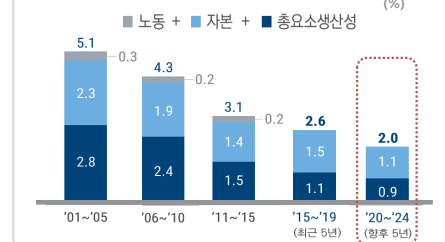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고령화 심화

인구구조 변화 전망(중위, NABO) (%)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

잠재 성장률 전망(NABO) (%)



주 1. 해당 기간별 평균치

주 2. 2019년까지는 실적치, 이후는 전망 기초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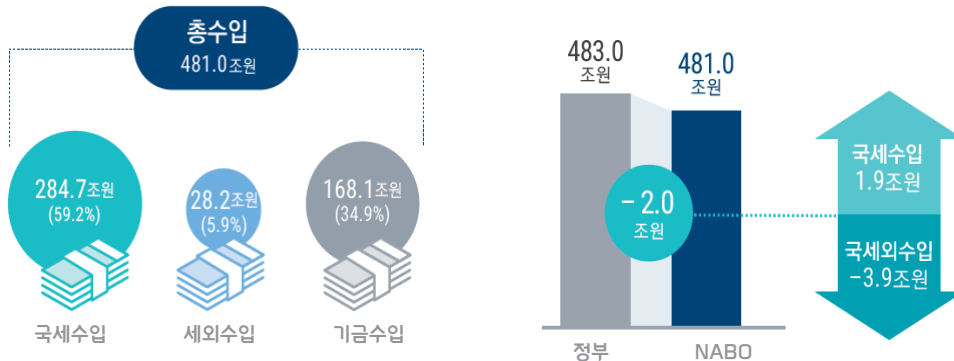
nabO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5

I-3. 2021년도 총수입 전망(NABO)

NABO는 2021년 총수입을 481.0조원으로 전망
정부 세입예산안(483.0조원)을 2.0조원 하회



nabO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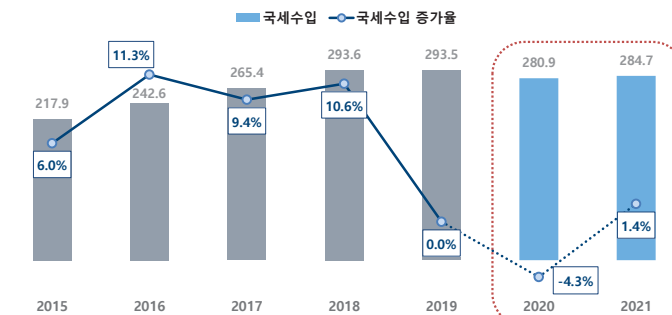
6

I-4. 2021년도 국세수입 전망(NABO)

NABO는 2021년 국세수입을 284.7조원으로 전망
경제활력 저하로 국세수입 증가율은 둔화 추세

국세수입 추이 및 전망(NABO)

(조원)



주: 2020~2021년은 NABO 전망

NABO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7

II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

II -1. 2020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 특징

**정부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소비활성화, 서민·소상공인 지원, 과세형평 제고에 중점**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투자·소비활성화 지원

- 투자세액공제 확대(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금융투자소득 세제개편(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과세 전면시행)
- 2020년 한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상(소득구간별 현행 대비 30만원 인상)
- 전기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등

서민·소상공인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매출액 4.8천만원→8천만원) 및 납부면제(3천만원→4.8천만원) 기준금액 상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완화(가입대상 및 운영범위 확대)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최고세율 42%→45% 인상) 등

nabo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9

II -2. 2020년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특징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은 정부 대비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수준의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개편안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축소(2단계) 및 세율 인하(류성걸, 송언석, 추경호의원안)
-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 후 증권거래세 폐지(유동수의원안)
- 공적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용품 세제지원 신설(박홍근, 이상직, 이용선, 서영석, 서정숙의원안 등)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혼합형 방식 도입(박광은, 조정식의원안 등)

정부안 대비 확대안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김정재, 김철민, 박홍근, 서영교, 이상직, 윤영석, 정희용의원안 등)
- 시설투자 세액공제 공제를 상향(대기업 10%- 송언석, 추경호의원안, 대기업 5%- 김상훈의원안 등)
-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 과세 적용(양경숙의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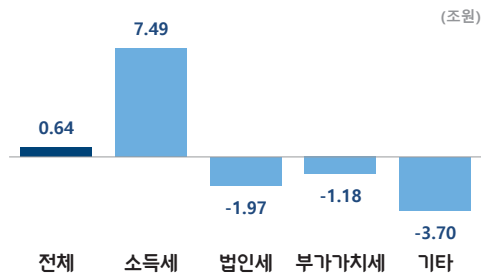
nabo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0

II - 3. 2020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 세수효과(NABO)

NABO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21~'25년) 총 6,396억원 세수증가 전망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NABO): 2021~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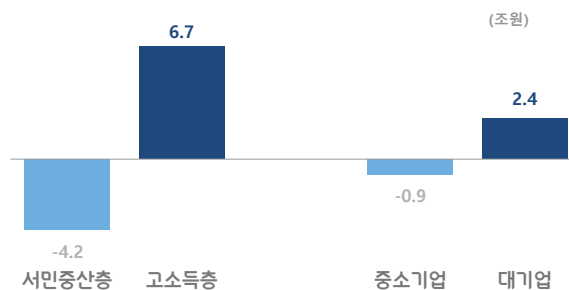


주: 기준년도(2020년) 대비 증감액을 누적인 누적법 기준

II - 3. 2020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 세부담 귀착(NABO)

NABO는 향후 5년 서민·중소기업 세부담은 5.1조원 감소,
고소득층·대기업 세부담은 9.1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20년 정부세법개정안의세부담 귀착(NABO)



주: 기준년도(2020년) 대비 증감액을 누적인 누적법 기준

II -4. 세목별 분석: 소득세

‘금융투자소득’ 분류 신설 및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마련(’23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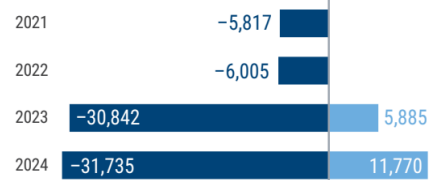
- 자본이득 과세체계의 토대를 마련한 점에서 높게 평가
-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따른 세수 유출 감안시 세수중립성 측면은 아쉬운 부분
- 금융세제 일관성 및 세제 중립성 측면에서 금융투자상품간/금융소득 과세와의 관계는 보완 필요

금융세제 개편안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21~’23)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23)

금융투자소득과세안 세수효과(NABO)

■ 증권거래세 ■ 소득세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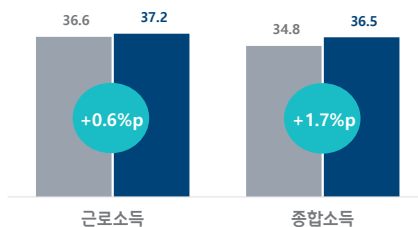
II -4. 세목별 분석: 소득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세 0.6%p, 종합소득세 1.7%p 상승 전망
- 세제 누진도 강화에 따른 고소득층 실효세율 상승 속도, 높은 면세자 비중 등 감안 필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 실효세율 변화(NA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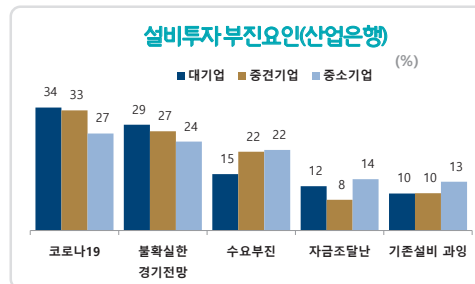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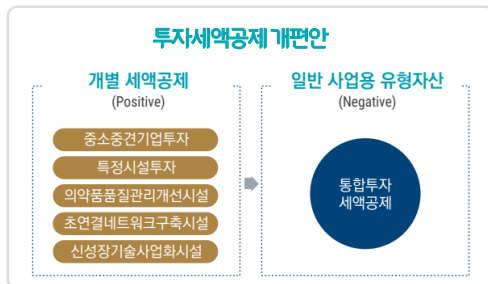
■ 현행 ■ 개정안 (%)



II -4. 세목별 분석: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개편(‘통합투자세액공제’ 재설계)

- 개편안의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 존재(개별 투자세액공제 단순·효율화 or 경기대응)
- 경기대응 측면에서 투자대상 확대 뿐 아니라 한시성을 전제로 한 과감한 지원이 보다 효과적
- 작은 제도변경은 시장혼란 가중, 기업이 당면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예측가능성·안정성 제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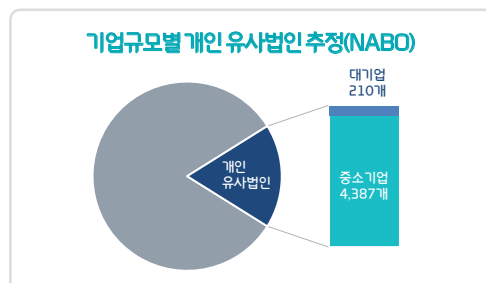
II -4. 세목별 분석: 법인세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 행위를 악용한 조세회피 대응 필요성은 동의
- 지분을 조정을 위한 명의신탁, 사후환급 등 조세운용비용(징세+협력비용) 증가 등 부작용 우려
- 해외 유사 제도 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 필요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과세안

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보유 지분 80% 이상
과세 방식	주주별 배당간주금액x14%(원천징수세율) * 주주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기타	배당간주금은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



II -4. 세목별 분석: 소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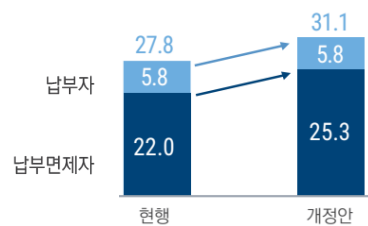
● ● ● ● ● ● ●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 인상

- 개정안에 따른 납부면제자 비중은 현행 22.0%에서 25.3%로 3.3%p 증가할 전망
- 간이과세제도의 취지(소규모 사업자 납세편의) 감안, 업종별 부가가치를 현실화 등 제도 합리화 필요

개정안에 따른 간이과세자 구성비중 변화(NABO)

(전체 개인사업자 대비, %)



주: 2018년 신고기준

nabo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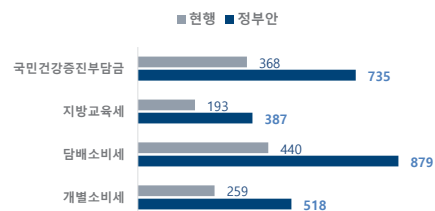
II -4. 세목별 분석: 소비세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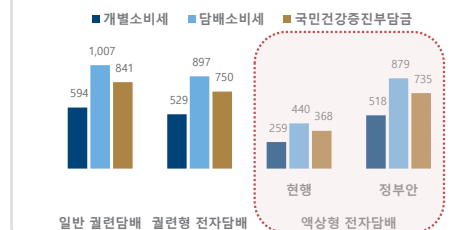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인상 및 과세범위 확대

- 정부안은 새로운 유형의 유사 담배와 기존 담배간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
- 다만, 과세대상의 시행령 위임은 과세요건 사항의 하위 법령 위임에 해당할 우려
관련 의원안은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담배 정의 자체를 확대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

액상형 전자담배(0.7ml) 제세부담금 변화(원)



담배간 제세부담금 비교 (원)



주: 일반 결련담배(20개비), 결련형 전자담배(20개비), 액상형 전자담배(0.7ml) 기준

nabo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8

II - 5. 기타: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근거 마련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지원을 위한 소득세 기초자료 제공

-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 기초자료 이용 편의 제고, 조세정책연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
- 최근 빅데이터 활용 연구 및 입법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수요도 증가하는 상황
-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업무(「국회법」 제66조 제3항) 수행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을 추가할 필요

(참고) 국세통계의 국회 제공 관련 근거법률(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과세정보'는 원칙적 비밀 유지. 단, 각호의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가능
 ①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조세·과징금 부과징수 목적, ② 국가기관-조세징수, ③ 법원-채출명령/영장발부시, ④ 세무공무원간
 ⑤ 통계청장-국가통계작성 목적, ⑥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기관, ⑦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급부지원을 위한 자격심사
 ⑧ 국정감사 조사위원회-국정조사 목적을 위해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 제공 요구, ⑨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구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통계자료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한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세법의 제·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 심사 및 국정감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 요구시
 2. 국회예산정책처장-세법의 제·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세입예산안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의장의 허가를 받아 요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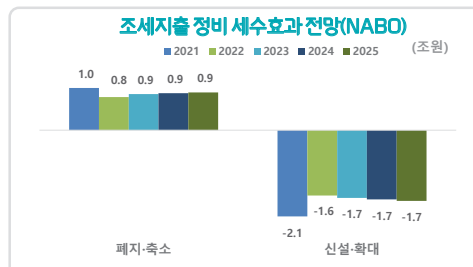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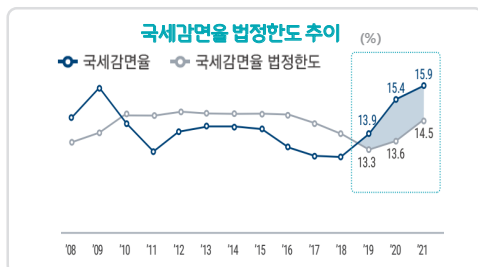
nabo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9

III-6. 조세지출 분석:현황 및 정비효과

조세지출 규모는 2020년 53.9조원(전년 대비 4.3조원 증가) 전망

- 3년 연속 국세감면을 법정한도 초과 예상, 올해 조세지출 정비로 향후 5년 4.3조원 세수감소 전망
- 2021년 조세지출 증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대응성 조세지원 신설·확대에 기인
- 향후 경기여건 감안시 적극적 관리대상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정비 필요



주: 세수효과는 징수기준, 일몰연장 가정 방식(제도개정 기준선)에 의해 산출

nabo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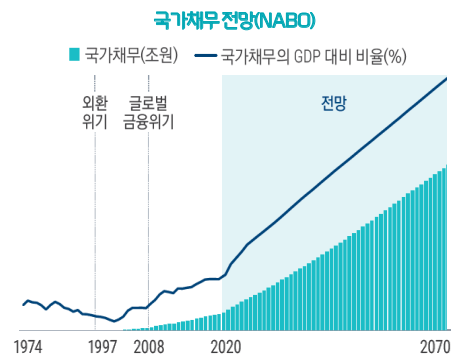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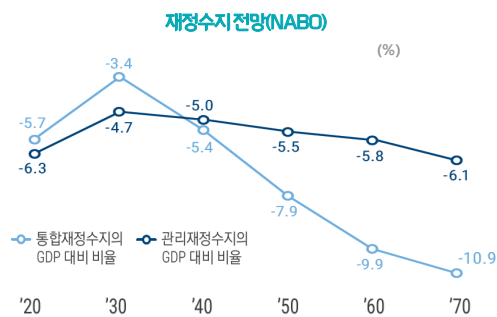
III

향후 과제

III-1. 재정여건

NABO 전망 결과 재정수지 악화, 국가채무 확대

사회보장성기금 적자 발생으로 2039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적자폭 심화



III-2. 향후 과제

국가재정 지속가능성 관심 증대,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대비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른 세입기반 강화 방안 모색

- ☛ 최근 3년간 세수감소·중립적 세법개정으로 세수증가율은 둔화하는 반면 지출은 확대될 전망
- ☛ 조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입 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춰야 함
⇒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세입확충 방안 논의 필요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효율적인 재정운용 지원 모색

- ☛ 국가재정운용계획 내 중장기 조세정책 연계 등 세입기반의 제도적 관리 강화
- ☛ 인구구조 변화로 향후 사회보장기여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할 때,
조세 정책 재량권 및 운신의 폭은 축소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조세당국의 고민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감사합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 온라인 토론회

토론1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제 및 토론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번 「2020년도 세법개정안」은 크게 3가지 기본 방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투자 및 소비 지원, 두 번째 서민·소상공인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고로 방향을 잡았음.
- 그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상황에서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저는 이번 세법개정안 중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함. 먼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음. 이번 세법개정안 중 가장 큰 이슈를 가지고 왔던 내용으로 2023년부터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주식 거래세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양도소득세 : 20%(3억 초과 25%) / 거래세 : 0.25%(현행) → 0.23%(21년) → 0.15%(23년)
-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정부의 조세 기조에 부합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 한편, 일부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장기투자 우대세율, 세원 지원을 부여하는게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주식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단타 매매 등을 부추길 수 있겠다는 시각도 있는 상황임

참고

- (이광재 의원) 1년 이상 주식을 장기보유한 대주주에게 최고세율을 14%까지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 (20.10.19.)
- (양향자 의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 투자 주식의 양도 이익에 대한 세금 감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 (김병욱 의원)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보유 공제, 공매도 금지 6개월 유예 등을 주장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개인투자자들의 단기투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투자 우대세율, 세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 미국의 경우 이자·배당·단기 자본이득은 종합과세하되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장·단기 기준선은 1년으로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면 세율이 높은 종합과세(10~37%)가 적용되지만 1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투자 수익 금액에 따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함. 즉, 미국은 주식을 단기로 보유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셈임.

*미국의 경우 \$78,750달러까지 0% / \$78,750~488,850까지 15% / \$488,850 초과 시 20% 부과

*(기재부) 이번 개편안이 장·단기 구분 없이 모두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

- 기재부는 주식 장기보유시 특별 공제 혜택을 준다면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에게 감면효과가 집중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음. 그렇다면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를 배제하고 장기 보유에 낮은 세율로 우대하는 등 혜택을 주는 등 다각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기재부)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세율체계, 경제적 특성이 달라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공제가 필요 없다는 입장임. 또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에게 감면효과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두 번째로 요즘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반발이 가장 심한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초과 유보소득 과세 제도는 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적정유보금을 초과해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 기재부는 제도도입의 취지가 사실상 개인사업자인데 법인으로 전환하여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하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음. 실제로 1인이 100% 지분을 가진 개인유사법인은 2014년 14만 개(전체 23%)에서 2019년 28만 개(전체 32%)로 크게 증가했음. 하지만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까닭에, 실제 초과유보소득은 연구개발이나 미래 투자 등을 목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실정임.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유사법인으로 할 경우 그 수는 증가할 예정

- 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에 초과 유보소득 과세방침에 대해서 중소기업 현장의 우려와 걱정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음. 또 2주 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며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았음. 유보소득이 중소기업의 미래를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용자를 받기 위해 재무제표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는 현실을 확인했음.

*기획재정부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임대소득 등에 대한 조세 회피를 노린 '무늬만 기업'에만 과세가 이뤄지도록 법안과 시행령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잦아지지 않자,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과세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0.11.4. 기재부 보도자료

- ①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
 - ②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 보유
 - ③ 초과 유보소득 중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 부채상환, 고용, R&D를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 (시행령 개정안 : 10.29 발표)
-
- 기재부가 새로운 과세제도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나, 현장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어야 함. 중소기업중앙회의 추가 설문조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제조업을 비롯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한 대상과 업종을 명확하게 한정해 과세 대상자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모든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함.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후 수정이 필요해 보임.
 - 마지막으로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음.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공모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에 한해서 배당소득이 발생 시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음. 공모 인프라 펀드에 투자해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14% 원천징수로 끝내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겠다는 내용임.
 - 개정안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자산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나아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참여가 가능한 공모 펀드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공모 펀드를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재산증식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짐.
- *특별자산펀드 현황 : 공모 4.9조원 (2.3%) / 사모 100.1 (97.7%)
- 하지만 공모 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은 14%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아무런 세제상 혜택이 없음. 쉽게 말해 고소득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만 수혜자가 되는 것임.

- 게다가 정부는 지난 7월 비슷한 시기에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뉴딜 인프라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음. 뉴딜 인프라 펀드에 2억 원 한도 내의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이 발생 시 9%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으로 이번 개정안보다 유형도 확대되었고 과세혜택도 늘어났음.

*당·정협의 이후 박홍근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 (20.10.23.)

조세특례제한법 비교

개정안	내용	유형
세법개정안 (20.7.22)	공모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의 1억 까지 원천징수세율(14%)로 분리과세하는 특례 신설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민간투자법)
이광재 의원안 (20.8.13. 발의)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중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5%,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 신설	공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박홍근 의원안 (20.10.23. 발의) 당정협의안	디지털, 그린 경제 관련 펀드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의 2억까지 9%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 신설	공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민간투자법) 공모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 이번 세법개정안 이후 발의된 2개의 의원안 모두 펀드의 유형 확대와 세제지원도 대폭 늘어났음. 즉,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공모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실효성이 낮고 일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임. 정부는 지금까지 과세 형평 차원에서 고소득자의 과도한 세제혜택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고소득자가 공모 펀드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봄.
- 그렇다면 정책의 취지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세제지원 혜택이 돌아가고 뉴딜 펀드는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함. 또 국민들의 재산증식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당·정협의안(박홍근 의원안)과 같이 세율을 낮춰 투자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투자 및 소비 활성화, 서민·자영업자 지원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 인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나아가 부동산 시장 안정, 소득불균형 완화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도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도 발견되었음. 여기 오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내도록 하겠음.

2020년 세법개정안 온라인 토론회

토론2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



발제 및 토론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

I 총론- 세수 현황 및 세법 개정 방향

- '18년까지 4년간 전례를 찾기 힘든 세수 호황* 이후 지난해부터 국세수입 증가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올해는 이미 국세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이 예견돼 있었던 상황에서, 코로나팬데믹까지 겹친 상황임.

* 국세수입(결산 기준): '15년 217.9조원(12.4) / '16년 242.6(24.7) / '17년 265.4(22.8) / '18년 293.6(28.2) / '19년 결산은 아직 심의 중 (2020.11.9. 현재)

- '21년 국세수입은 '20년 예산(292.0조원) 대비 △9.2조원 (△3.1%) 감소한 282.8조원으로 전망

* 3차 추경예산(279.7조원) 대비 3.1조원(1.1%)

- 과거에도 IMF(1998년), 금융위기(2009년), 카드사태(2013년)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세수가 감소하였으나, 그 어느 위기 때 보다 세입 감소 규모가 컸음.

* 전년 대비 세감소: ('98년) △2.1조원, ('09년) △2.8조원, ('13년) △1.1조원, ('20년 3차추경) △13.7조원

- 우리 경제성장의 동력이 약화됨에 따른 저성장 국면에서 외부요인(코로나19)이 겹쳐진 상황임, '21년 국세 수입은 법인세(△11.1조원), 부가세(△2.2조원), 종합소득세(△9,300억원), 관세(△4,300억원) 등이 감소할 전망 <참고2>

- 결국,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

- 기업이 의욕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확대된 수익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 조세정책 필요

- 지나친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시장에서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면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임

▣ 2020 세법 개정의 문제점

0. 국가재정의 재원조달이라는 조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세법개정

1) 2021년도 총지출 555.8조원으로 전년대비(본예산) 43.5조원 증가, 총수입은 전년대비 1.2조원 증가에 그침 <붙임1 참조>

- 지난해 총지출은 512조원으로 43.3조원 증가, 총수입은 전년대비 6조원 증가

2) 국세감면(조세지출)은 계속 늘어 3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예상('19~'21년)

- 2020년 조세지출규모 53.9조원(전년대비 4.3조원 증가)예상, 올해 조세지출 정비로 향후 5년간 4.3조원 세수감소 예상(국회예정처)

* 2021년 국세감면규모: '20년 대비 2.9조원 증가한 56.8조원 전망

3) 2020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향후 5년 기준)는 부끄러운 수준

- 2017년 +23.6조원, 2018년 △8.9조원, 2019년 △0.5조원

- 2020년 +676억원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세제/조세제도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함

1)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공평성)

2)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최소화(경제적 효율성)

3) 행정적 단순성

4) 책임성(정치적 책임성 or 정치적 확실성)

5) 신축성

6) 확실성(조세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확실하게 집행되어야 함)

이번 2020년 세법 개정안은 조세제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

공평성, 효율성등을 충족하려면, '넓은세원·낮은세율'(국민개세주의원칙)이 지켜져야 했지만, 현 정부는 이것을 외면했음

2. 조세제도의 원칙은 세목별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2%→45%)과 과표구간 조정(7개→8개)은 잘못

- 왜 10억원 이상은 45%의 세금을 내어야 하나?
- (근로소득세)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기했다고 하지만, 721만명의 면세를 그대로 둔 채 몇 몇 부자를 겨냥한 '핀셋 증세'에 불과했음
 - 기재부 추산, 최고세율 대상 1.6만명, 세금 9천억원 추가 징수
 - 근로소득세 면세자(2019년 기준, 국세청)는 721.9만명으로 전체의 38.9%
 - ※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한국 OECD 국가 중 3번째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많은 나라<붙임2 참조>
 - 룩셈부르크(19구간), 스위스·멕시코(11구간), 한국(8구간), 일본·미국 등(7구간) 순

2)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는 법인세, 세율 인하하고 과표구간 단순화 필요

- 2020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구간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4개 구간으로 가장 많고, 룩셈부르크가 3개,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2개 구간이며, 나머지 32개국은 단일세율임
 - * 과세표준 구간 :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및 3천억원 초과 25% 적용(4개구간)
-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영국, 일본, 독일, 미국 등도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이지만, 문재인정권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25%(2017년)로 인상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
- 법인세 초과부담(Excess burden)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함. 세율이 높아질수록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됨

-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세율이 2배로 인상되면 초과부담은 4배가 될 수 있음
- 동일한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재화 또는 생산요소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재화와 생산요소에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

3)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세제(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는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말라는 증세대책이며,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징벌적 과세에 불과해

- 6.17대책과 7.10 부동산대책은 집값 안정보다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래하는 모든 단계에서 현행 세율을 대폭 올린 것이 핵심(양도·취득·종부세 3종 세트 인상)
- 2021~2025년 주택보유 세수추계(국회예산정책처), "주택 실수요자의 추가세금 부담 없다"는 정부 주장은 허구
 - 주택자가 부담할 연평균 종부세는 △2021년 232만원 △2022년 295만원 △2023년 343만원 △2024년 395만원 △2025년 488만원 등으로 5년간 2.1배로 증가
 - 종부세와 재산세 등 주택분 보유세 총액은 2021년 8조3414억원에서 2025년 13조4470억원으로 5년간 61.2% 증가
- 문재인정부의 편가르기식 부동산 정책프레임 : 강남과 비강남,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종부세 납부자와 비납부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으로 갈라치기로 국민갈등 조장

3. 누더기가 되어버린 「조세특례제한법」은 정치권의 '민원 창구'로 전락

- "조세특례"(Special Taxation)는 조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례세율과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비과세·감면 적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세 감면'을 칭함(조특법 제142조의2)
- 조세특례는 한번 도입되면 일몰 연장을 통해 항구화되는 경향이 있어 조세 특례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
- 2019년 일몰도래 52개 항목에 대한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 평균은 89.6점이며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의 점검결과 평균은 38.1점으로 51.5점 낮게 평가

- 성과 증명 못하면 폐지하겠다고 도입한 ‘의무심층평가’조차 활용도 떨어져
 - 2015년 2건 이후 폐지의견이 그대로 인용된 적 없음
 - 2018년 결과를 보면, 총 16건 중 재설계나 축소 의견 10건은 도리어 세율이 확대되거나 범위가 확대되었음 <붙임 참조>
- 조세특례법은 정치권의 민원창구로 전락하지 오래되었음. 조세특례 항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하나쯤 감면조항을 끼워넣어도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다는 이유도 한몫 (2020년 53.9조원 규모)

4. 기 타

1) 개인 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함

-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 행위를 악용한 조세회피(배당/투자/고용 않는기업) 대응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신중해야 함
 - *과세요건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 △유보소득 중 2년 이내에 투자·부채상환·고용·R&D를 위해 적립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남은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
 - ** 과세방식 : 배당간주금 14%,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배당간주 과세는, 과세 요건이 불명확하며 기업의 미래투자 위험대비 등을 위한 자율적 경영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
 - 재투자나 설비투자를 하려면 자기자본 20~30%는 있어야 금융기관이 융자해 줌. 유보금에 과세하겠다는 것은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
 - * 중소기업의 44.6%는 경기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30.4%는 미래투자, 연구개발, 신사업 진출 등을 위해 사내유보금을 적립 중(중소기업중앙회)
- 전 세계적으로 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 소득세로 과세하는 나라는 없음

- 정부가 사례로 제시하는 일본의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와 미국의 ‘개인지주회사세’ 모두 법인에게 일반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과세하는 것임.
유보금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님.

2) 주식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 vs 증권거래세

- 이번 세법개정안 ‘금융투자소득’ 개념 새롭게 도입함*. (‘22년 시행)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22년),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23년)도 단계적으로 과세 확대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구분에 금융투자소득 추가

- 금융투자소득 개념 도입에 있어 조세체계에 대한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금융시장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지에 따른 것임.
- 1956년 3월 대한민국 증권시장이 개장한 이후, 한국 증권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78년 증권거래세를 제정한 이후 현행 세제 체계를 이어온 것임. 현재 대한민국 증권시장의 경쟁력은 어느 위치에 있고,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양도소득세 체계로의 전환이 과연 우리 증권시장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감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에 있어 조세간의 과세형평을 따지기 이전에 시장참여자 간에 과세형평은 지금 맞는 상황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음. 국내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 개인·기관·외국인, 이중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돼 있음.
- 반면, 증권거래세 인하에 혜택은 개인과 기관 외국인이 모두 누리는 상황임. 이는 기관과 외국인의 부담을 덜고 개인의 부담을 더지우겠다는 의미임.
- 직·간접 투자 간 과세 차별 해소 필요(기본공제금액 및 전면과세 시기 등 일치 필요) 투자자는 과세 상 불이익으로 인해 국내 주식과 경쟁 또는 대체제 관계인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따라 공모주식형 펀드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5. 방향성도 없고, 중기적 관점도 보이지 않는 누더기 세법개정에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1) 조세수입은 기본적으로 세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목적임

따라서, 정부는 세출에 맞춰 세수(세입)를 증가시켜야 함

- 경기가 어려워도 세수 확보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임.
-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나라살림 챙기기보다는 국민들로부터 ‘욕먹을 일 안하면 된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음

2) 2021년도 관리재정수지가 110조원 적자인데도, 이 정권은 빚 낼 줄만 알았지(국가채무 140조 증가) 세입기반 확충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세법개정하며 제시하는 기본방향은 지난해나 올해나 별반 차이도 없고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이라는 선언적 문구만 매년 반복하는 답답한 상황임

2019년 세법 개정 기본방향	2020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①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②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③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강화	① 코로나19피해극복, 경제활력 제고 ② 포용기반 확충, 상생·공정 강화 ③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환경조성

3) ‘세법 개정은 1년에 한 번’이라는 원칙도 무너진 지 오래되었음. 정부 정책 하나 나올 때마다 세법에는 새로운 조항 덧붙여 누더기 세법 만드는 것은 언제 중단할 것인지?

갈수록 기형적 구조(법인세, 소득세 등 상위 1%가 극단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로 바뀌는 우리 세수기반을 바로 잡고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 세입기반을 확충할 근본적인(진정한 의미의) 세제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임 (세제개편을 통해 고세율·고감면 →

저세율·저감면으로 구조 변화)

2020년 세법개정안 온라인 토론회

토론3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발제 및 토론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 총론적 평가

2020년 세법개정안은 찢김 핀셋증세로 감추지 못하는 보편감세의 연장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총괄 평가는 감세 기초의 유지 및 확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핀셋 증세를 일부 가미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투자세액공제제도 등 조세지출의 유지강화, 증권거래세 인하, 자영업자 간이과세의 확대 등이 감세에 해당한다면 소득세율 45% 초과구간 설정은 핀셋증세의 대표격이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의 도입은 증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주식양도소득 기본공제 5,000만원, 손익통산과 이월공제의 허용, 2단계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분류과세 등의 제도 설계로 인해 실질에서는 감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의미가 남다른 것은 지금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코로나 경제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 첫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조세·재정 기초의 전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계기였다. 결론적으로 2020년 세법개정안은 수출주도성장이라는 경제모델에 의해 틀 지워지고 글로벌 신자유주의 감세 경쟁의 수용에 의해 공고화된 현재의 조세제도를 변화시킬 의지가 재정당국과 정부에게는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3~4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던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최근 보유세 인상과 같은 제한적인 과세 강화조치마저도 선거를 의식한 거대정당들의 일 치된 감세 요구에 의해 좌절되고 굴절되는 현실이 있다. 2020 세법개정안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수용하지 않으려는 정부와 증세정치는커녕 감세 경쟁에 매몰되는 정치권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소수의 수혜자 집단의 감세 요구는 늘 정치적으로 과잉대표되는 반면 증세와 재정의 복지 효과를 체감한 적이 없는 다수의 국민은 이 이슈에 침묵하거나 심지어는 소수 수혜자 집단의 요구에 동조하는 현실도 있다.

국민의 대다수를 증세의 수혜자로 만들고 이로써 증세정치의 활로를 여는 접근만이 비과세 감면 제도의 비대한 발달과 낮은 조세부담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강제되는 빈약한 재정지출과 낮은 복지 수준의 쳇바퀴 경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은 토지보유세를 재원으로 하는 토지배당, 탄소세를 재원으로 하는 탄소배당, 나아가

시민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국민 기본소득 방식의 우수성을 역설적으로 재확인시킨다.

2. 주요 개별세제 평가

1) 금융투자소득의 도입

○ 상장주식 기본공제 5,000만원은 자가당착적

- 예산정책처가 상장주식 기본공제 5,000만원이 조세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음. 금융투자소득 내의 여러 소득 간에 손익통산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들 금융투자상품간의 투자 유인을 동등하게 제공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인데 기본공제 5,000만원은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만 월등하게 우대한다는 점에서 손익통산을 도입한 취지와는 모순됨
- 상장주식 기본공제 5,000만원은 금융투자소득 내의 조세중립성뿐만 아니라 종합소득,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 범주와의 조세중립성도 훼손, 국세청 제공 2018년 귀속 근로소득 분위 자료에 따르면 5,000만원은 근로소득 상위 16% 구간에 위치하고 이 구간에서의 실효세율은 대략 6%. 근로소득 상위 16%에 속하는 이들도 최소한 연 300만원 이상 세금 납부
-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제도 안착 이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답변
-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이 일몰되지 않고 계속 재연장되어온 점, 3~4년 전에 여야합의로 시행령에 반영됐던 상장주식 과세대상자 확대가 최근 무산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번 주어진 비과세감면을 바로잡는 것은 지난한 과정
- 백 번 양보해서 제도 안착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공제액을 줄여나간다는 로드맵 정도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

○ 조세회피 방지 규정의 도입 필요

- 금융투자소득 안에 손익통산과 이월공제(5년)의 허용은 일정한 합리성이 있으나, 동 제도가 악용되어 부당한 조세회피책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세회피 방지책이 함께 도입되어야 함
- 대표적으로 가장매매(wash sale) 규정과 스트래들(straddle) 규정을 들 수 있음
- 이들 규정은 미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1091조와 1092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

- 으며, 이 가운데 가장 매매 규정은 1세기 전인 1921년에 도입되어 꾸준히 보강되어 왔음
- 납세자로는 조세회피가 '합리적'이라는 전제 하에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면 당연히 조세회피 방지책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었어야
 - 이번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대해 경제부총리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요구가 있다면 논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복잡한 법안을 현재 이미 논의에 들어간 상임위 세법개정안 논의 전에 발의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국회 법안 발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재부가 안을 준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2가지 대표적인 조세지출 문제

○ 국세수입 증가율과 조세지출 증가율 비교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결과 2015년 기준으로 국세 수입은 2021년까지 연평균 5.0% 증가한 반면 국세 감면은 9.7% 증가하여 수입과 지출 사이의 불균형이 더욱 확대하는 모습
-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이 추세를 확대시키는 조세지출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확대 강화와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들 수 있음

국세수입액과 국세감면액 증가율 비교*

단위: 조원

연도	국세수입	국세감면	국세감면율
2015	217.9	35.9	16.5%
2016	232.7	37.4	16.1%
2017	265.4	39.7	15.0%
2018	293.6	44.0	15.0%
2019	293.5	49.6	16.9%
2020	279.7	53.9	19.3%
2021	282.8	56.8	20.1%
증가율(2015~2021)	29.8%	58.2%	21.9%
연평균증가율	5.0%	9.7%	3.7%

자료: 용혜인 의원실(기획재정부 2016~2021 조세지출예산서 재구성)

*2015~2019년은 국세수입액과 국세감면액의 실적(결산) 기준

*2020~2021년은 전망(예산) 기준

○ 통합투자세액공제

- 대부분 2021년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었던 여러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합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로 재연장
- 기존 투자세액공제제도 중 연구및인력개발 설비투자과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조세감면의 90% 이상의 혜택을 차지해 대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지나치게 떨어뜨리는 제도로 비판받아 왔음
- 또한 투자세액공제제도가 생산성 증대나 고용창출에 기여했다는 설득력 있는 분석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임
- 이번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2가지로, 첫째가 비과세감면 혜택을 주는 설비투자의 범위를 유형자산 일반으로 확대한 것이며, 둘째로 일몰 규정을 아예 도입하지 않은 것
- 감면 혜택을 주는 설비투자를 유형자산 일반으로 넓힌 것은 첨단기술의 도입, 생산성 향상, 고용 확대 등과 같은 구체적 목적을 특정하는 조세지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묻지마 투자 지원’이며, 일몰 규정의 미도입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주요 배경으로 잡은 당국의 의도와도 맞지 않음, 최소한 일몰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따른 조세지출 증가 추이

단위: 억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신용카드 조세지출	17,889	18,444	18,537	21,176	22,553	24,821	31,725
전년대비 증가율		3.1%	0.5%	14.2%	6.5%	10.1%	27.8%

자료: 용혜인 의원실(기획재정부 2016~2021 조세지출예산서 재구성)

- 1999년 도입 당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주요 목적이었으며,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평가
-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소비진작을 주요 이유로 공제한도를 30만원 정도 인상했으나 이 때문에 추가적인 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
- 그러나 공제한도 인상에 따른 조세지출은 2020년 올해 전년 대비 10%, 그리고 2021년에는 올해 대비 27.8%나 증가하며, 올해 대비해 6,900억원 증액된 조세지출은 소득세율 45% 초과구간 신설로 인한 약 9,000억원 세수효과를 77%나 잠식함.

-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인구가 면세점 이하에 있는 현실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은 대체로 소득 중상위층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 핀셋증세로 초고소득자로부터 증세해서 소득 상위 구간자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낼 것임.
- 재정정책과 결합되지 않은 핀셋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동감하며, 핀셋 증식 방식으로는 세율 최고구간 계층의 조세회피 및 조세저항 심리도 커질 수밖에 없음.
-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주문했으나, 자산(금융, 부동산) 과세가 정부와 정치권에 의해 감세 경쟁으로 치닫는 분위기에서 근로소득자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폐지하라는 주문이 갖는 정치적 호소력의 한계는 분명하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음

3)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임대주택 문제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종부세 부과 주택의 과세표준 비교

단위: 백만원

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현황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과세표준과 종부세액 추산	
구분	액수	실효세율	구분	비고
과세표준	108,542,594		119,469,041	=공시가격 - (인원 × 6억원) × 공정 시장가액비율 80%
종합부동산세액	665,771	0.61%	732,791	=과세표준 × 2018 주택분 종부세액 의 실효세율 0.61%
산출세액	465,854	0.43%	512,749	=과세표준 × 2018 주택분 종부세 산출세액의 실효세율 0.43%
결정세액	443,190	0.41%		

자료: 용혜인 의원실

주1. 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각 실효세율은 2018년 국세통계연보 자료로 계산

주2.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제공 임대주택 1채당 평균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출

- 이번 세법개정안에 주택분 종부세에서 법인에 대한 세율 상향과 기본공제 폐지 등이 담김
- 법인에 대한 종부세 혜택이 법인을 이용한 다주택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일정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
- 그러나 다주택 투기의 공백으로 남아 있는 또 하나의 비과세감면 혜택이 등록임대주택

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임

- 국세청이 제공한 2018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평균공시가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출한 결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과세표준이 119.5조원으로 2018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108.5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옴,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세수보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감면세액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나옴.
-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60~70% 정도일 것으로 보이며, 30~40%에 이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은 다주택 보유 투기에 대한 공백으로 남아 있어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이 제도는 조세지출의 특성에 부합하기에 폐지될 때까지는 조세지출에 포함되어야 함

4) 자영업자 간이과세 확대

-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부가세 간이사업자 적용범위 확대(전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8,000만원 미만) 및 부가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3,000만원 미만 → 4,800만원 미만)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편입
- 간이과세의 도입 취지는 신고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공을 통한 납세협력비용 절감이었으며, 지난 20년간 기준금액이 변동없이 유지되면서 축소되는 추세였음. 실제로 부가세 전체 과세표준에서 간이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0%에서 2018년 0.86%로 축소 추세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비중 추이 변화

단위: 조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과표	3,079.0	3,112.4	3,216.3	3,473.0	3,628.1
간이과세 과표	30.6	30.9	31.4	32.2	31.3
간이과세/전체	1.00%	0.99%	0.98%	0.93%	0.86%

자료: 용혜인 의원실(국세통계연보 2016~2019)

- 그러나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간이과세의 도입 취지는 왜곡되어 이제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되었으며, 적용범위 확대와 면제 기준금액 상향으로 축소 기조였던 제도가 확대 기조로 전환됨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확대 필요, 재난지원금 등 경제위기시 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해 객관적인 소득 파악과 세원 투명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이며, 이 제도가 확대강화된 가장 큰 명분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지원임에 반해 세법개정안에 한시적 확대임을 규정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임

2020년 세법개정안 온라인 토론회

토론4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발제 및 토론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올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로 인해 한국경제는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를 염두에 두면서 단기적인 위기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올 여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고용 침체와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세입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 동의하지만 이러한 단기 목표가 조세기반을 위축시킨다면,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많은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수정 혹은 폐기를 권고하고자 한다.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이나,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를 도입한 것,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 법인을 활용한 투기 근절 방안을 도입한 것은 모두 긍정적인 개편들이다. 이것들은 조세정의 취지에도 맞고 세원확대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자산시장에서의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제개편은 대규모의 증세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외환위기 이후 소득양극화와 자산양극화가 심각해진 상황을 소폭이나마 교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향후 코로나가 종식되고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증세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불공정한 조세제도라는 점에서 조세정의를 세우는 이러한 개편안들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다. 특히 다주택자, 단기 투기자, 초고가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의 강화는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자 위주의 구조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단지 보유세 강화가 저소득-고자산 노인계층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문제가 항상 이에 대한 반대논거로 제기되는데 주택연금 활용도 제고, 과세이연제도 도입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차원에서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개편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이다. 정부 개편안은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이 상이한 10개의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되 중소기업은 최대 13%, 중견기업은 6%, 대기업은 4%의 공제율(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은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8%, 대기업 6%)를 적용하는 안이다.

그러나 투자가 고용을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2010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대체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7년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개편되었다는 과거의 사정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돌아본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은 간신히 없앤 제도가 경제위기를 기회로 다시 부활하려는 시도에 불과하지 않은가라는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현재가 위기 상황이고 디지털, 그린 분야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을 우려해 없었던 제도가 이렇게 큰 폭의 혜택으로 다시 도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혜택을 줄이는 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은 입법 취지는 동의할 수 있으나 현재 제안된 안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상적인 개인법인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이용하여 소득세 회피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개인들을 타겟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가족회사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수많은 소규모 법인들도 의도치 않게 과중한 세부담을 볼 수 있다. 소득이 적은 법인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 설립 기준을 완화해 온 것은 기업들의 활동을 장려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규모 기업이라면 자금유통이 어려워 가족끼리 시작할 가능성이 크고 벌어들이는 이윤을 그대로 재투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배당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안된 세제가 시행된다면 대기업에게만 지우고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중견기업은 제외한 채 소규모 법인에게 지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기재부가 수정안을 제시하여 개인유사법인 가운데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사용료, 부동산 주식양도 소득 등 수동적 소득이 전체수입의 50%이상인 기업만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였다. 정부가 문제의식을 인식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50%만을 기준으로 할 때 이 기준을 피하려는 또 다른 문제도 우려되기 때문에 50% 이하인 경우 수동적 소득에만

선별 과세하는 조금 더 진전된 추가적 수정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조세회피수단이 되고 있는 과도하게 낮은 법인세율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익법인 관련 상증세법 개정안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정안은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공익법인으로 통합하면서 주식의 취득 및 보유한도를 10%로 인상하고, 10%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실공익법인요건 중 4가지에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가 추가하였다.

그러나 유형을 통합하되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한 것처럼 보이지만, 변경된 내용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공익법인에게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주식의 취득 및 보유한도를 확대해주면서 기존의 성실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 보다 강화되거나 추가되는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내용으로 제안되어 있다. 즉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하면서 사실상 모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를 10%로 확대하고 사후관리확인을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공익법인의 의무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제도의 합리화나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와는 거리가 먼 측면이 있는 것이다. 제도개편이 의미가 있으려면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공익활동에 대한 의무강화)를 위하여 제시된 출연재산가액의 1%의무지출 보다는 최소한 2%수준으로 더욱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는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납세의무자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어 복잡한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이 제도가 영세사업자들 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일반과세자들의 탈세를 유발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서 문제이다. 따라서 폐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정말로 납세편의를 위한다던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영세사업자들의 세부담을 낮춰주기를 원한다면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2020년 세법개정안 온라인 토론회

토론5

박형수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발제 및 토론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박형수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조세의 3대 기능에 입각하여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평가

-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공공재 생산·공급에 필요한 국가의 수입을 조달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소득재분배, 경제안정/성장촉진 기능

평가 1 : 2년 연속 세입확충 필요에 부응하지 못한 세법개정안 재정의 트릴레마(trilemma)에 대한 새로운 해법 필요

□ 지난해부터 지출 증가에 상응한 세입 확충에 실패하여 ‘재정적자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됨

- 내년도 총지출이 금년도 본예산보다 44조원 증가하는데 총수입은 1조원 증가에 그침
 - 지난해 총지출은 44조원 증가, 총수입 증가는 6조원
- 내년도 관리재정수지가 110조원(GDP대비 5.4%) 적자
 - 절대규모 및 GDP대비 규모 모두 금년 4차 추경의 119조원, 6.1%에 이어 역대 2위 수준 * 외환위기 직후 25조원(4.6%)
- 재정적자 100조원 시대 : 금년부터 5년 연속 재정적자가 100조원(GDP대비 5%) 초과하는 상황
 - 정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적자 규모가 2022년 123조원(5.9%), 2024년 128조원(5.9%), 2024년 128조원(5.6%)

□ 국가재정 문제의 본질은 재정의 트릴레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 트릴레마(trilemma)란 3가지(tri) 명제(lemma)가 서로 상충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선택적 상황

※ 딜레마(dilemma)는 2가지 선택지 간 진퇴양난

○ 재정의 트릴레마란 재정정책에 있어 다음 3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
에 달성할 수는 없다는 의미

- 높은 복지수준 - 낮은 조세부담 - 작은 국가채무

○ (기존 대응 전략 ①) 1가지 목표를 포기하고 나머지 2가지만 추구

- 고도 성장기의 우리나라는 ‘높은 복지수준’을 희생

- 스웨덴 등 북유럽은 ‘낮은 조세부담’을 포기

- 일본은 ‘작은 국가채무’를 포기

(단위: GDP대비, %)

	복지지출	국민부담	국가채무
우리나라(2015년)	10.2	25.2	43.4
스웨덴(2015년)	26.3	43.1	55.2
일본(2015년)	21.9	30.7	216.5

○ (기존 대응 전략 ②) 4번째 고려사항을 추가하여 창의적으로 해결

- 복지 이외 분야의 재정지출을 줄여 복지 확대 재원으로 활용

(예) 국방지출(1980년 GDP의 4.8%→1995년 2.3% = ▲2.5%p

경제지출(2006년 GDP의 7.8%→2018년 5.4% = ▲2.4%p

- 도로, 철도, 학교, 하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에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투자사업 또는 수
익형 민자사업) 등 민간자금을 동원

□ 현 정부의 재정 트릴레마 대응 전략은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처럼 작은 국가채무를 포기하는 전략

○ 트릴레마 대응 관련 재정지표의 변화

- 지난 4년간 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6%(총지출은 9.6%)
 - 중앙정부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증가 추이
'10년 81.2→'16년 123.4→'20년(4차추경) 197.3→'24년 242.7조원
6년간 +42.2조 4년간 +73.9조 4년간 +45.4조
- 증세정책의 실종으로 국고조달이라는 조세의 기본 기능이 마비
 -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 효과(향후 5년간)
'17년+23.6→'18년▲8.9→'19년 ▲0.5조원→'20년 +0.1조원
 - 조세부담률: '16년 18.3%→'19년20.0%→'24년19.0%
- 국가채무비율이 금년 40%를 초과하고 '24년 60%에 달할 전망
 - '10년 392→'16년 627→'20년(4차추경) 847→'24년 1,327조원
6년간 +235조 4년간 +220조원 4년간 +480조원
 - 국가채무비율(GDP대비 국가채무)
'10년 29.7%→'16년 36.0%→'20년(4차추경) 43.9%→'24년 58.3%

○ 역대 정권별 연평균 증가규모(GDP대비 %p)

	제5 공화국	제6 공화국	문민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MB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국민부담	-0.19	0.54	0.17	0.46	0.48	-0.01	0.26	0.37
국가채무	-0.48	-0.87	-0.01	1.18	2.08	0.66	1.31	2.22
복지지출	0.06	0.25	0.04	0.33	0.42	0.43	0.28	0.32+α
(참고)								
조세부담	-0.20	0.18	0.04	0.20	0.30	-0.20	0.13	0.08
재정지출	-0.53	0.74	0.03	0.52	0.64	0.55	-0.13	0.43+α

주 : 문재인 정부는 국민부담·국가채무는 5년, 복지지출은 첫 2개년 기준임

□ 재정 트릴레마에 대한 새로운 해법에 대한 제안

○ 재정의 기본원칙을 정립하여 3가지 재정정책 목표의 재균형 도모

- 건전한 국가재정을 유지하는데 왕도(지름길)는 없음
 - 결국 세출 억제 + 세입 확충!
- 복지 이외 지출분야에서 복지로의 재원 재배분이 불가능한 상황
 - 2018년 기준 GDP대비 재정지출 규모 국제비교
 복지 이외: 우리나라 19.6% vs 우리나라 외 OECD 평균 20.4%
 복지 지출: 11.6% vs 21.8%

○ 복지지출 증가 속도를 적정수준으로 제어

-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재정추계(2019년 7월)
 - '18년 GDP대비 11.1%→'30년 16.3%→ '60년 28.6%(+17.5%p)
- 현행 복지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고령화·성장 효과만 감안해도
 향후 40년간 연0.42%p씩 증가(과거 50년간 0.22%p의 2배)
-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지출 증가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큰
 편인데,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수준 자체도 더 높여나가고 있음

○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국가채무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데, 2019년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OECD기준으로 38%로 OECD평균(81%) 대비 작는데, 다음 이유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작은 수준을 유지해야 함

- ① 소규모 개방경제로 국내·외 충격이 잦고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음
- ②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규모가 큼
- ③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선진국에 비해 고령인구비중이 낮은 지금은 국가부채를 가능한 한 작게 유지해야 함
- ④ 더군다나 남북통일 과정에서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이 불가피

- 바라는 복지 수준과 감내할 수 있는 국가채무 수준으로부터 국민 부담 규모가 도출되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완만하고 지속적인 증세정책 추진
- 적정 속도는 과거 50년 동안의 국민부담률 상승 속도인 연 0.32%p보다 다소 높은 수준
 - 사회보험료는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안정화에 필요한 수준을 감안해 인상
 - 조세는 국제적 조세정책 큰 흐름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따라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도록 보다 넓은 대상에 대해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세 추진
 - 증세 내용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세수가 지나치게 작은 소득세와 소비관련 조세부담을 늘려나가되,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소폭 세부담 인하
 - ① 소득세: 고소득자 위주의 증세정책은 경제왜곡 및 조세회피를 유발하는 반면 지나친 면세자 양산 등 부작용이 크고 지속적인 증세를 어렵게 함
 - ② 소비세: 유해행위 관련 개별소비세 부담을 강화하면서 1977년 도입이후 43년째 동일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조세저항을 감안해 중기적으로 검토
 - ③ 법인세: 최근 10년 가까이 기업규모별 법인세부담 격차가 계속 커졌으므로 이를 축소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세율인하 및 조세지원 강화
 - ④ 상속증여세: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일자리·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정교하게 설계하여 가업승계, 사전증여 등에 대한 세부담 경감 정책 필요
 - ⑤ 부동산 관련 세금: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되 일부 계층의 세부담이 단기간에 급등하지 않도록 조절

평가 2 : 미흡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함

-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 및 복지지출에 의한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보다도 작음
 - ※ 소득재분배 정책효과와 비교분석(박형수, 재정학연구 2019년 8월)
- 재분배 정책효과가 큰 현금급여와 소득세는 정책규모가 매우 작은 반면 현물급여는 정책효율성이 낮아 재분배에 기여하지 못함
 - 현금급여 및 직접세의 재분배 효과는 영국, 호주의 43%
but 정책규모가 39%이므로 정책효율성은 103% 수준
 - 반면, 현물급여 및 간접세의 재분배 효과는 영국, 호주의 17%
정책규모가 65%에 달하여 정책효율성이 23%에 그침
- 소득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압도적인 반면, 재산세는 중립적이거나 약하게나마 역진적
 - 영국과 비교하면 직접세의 누진도 보다는 세부담 규모가 문제
 -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를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과 비교해보면 소득세 규모가 더 작지만 고소득층에 대한 부담의 누진도가 훨씬 커 재분배 효과가 크고 정책의 효율성도 높음
- 간접세는 다소 역진적이지만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
 - 규모가 큰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담배세, 주세가 다소 역진적
 - 교통에너지환경세나 개별소비세의 경우는 한국에서는 다소 누진적이지만 영국은 다소 역진적
- 조세의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이 아니라 각종 공제 및 면제 제도를 과감하게 축소해야 함
-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재분배 효과는 기대보다 작은 수준

평가 3 : 일시적 경기부양은 가능하겠지만 성장촉진 기대는 무리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지원하는 정책은 일시적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함

○ 특히 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은 일시적인 소비 활성화 및 소비시점의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기업 선결제 세액공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인상, 기업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등 이미 금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정책들
- 20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조세지출을 남발했음에도 중장기적 성장촉진 효과나 경제체질 개선 효과 기대는 요원할 듯

○ 2021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 14.5%를 크게 초과하는 15.9%로 전망되어,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법정한도를 초과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은 연평균 1조원에 달하는 조세지출 규모에 상응하는 기업 신규투자 유발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듯

- 이름과 달리 22년 동안(1981~2011년)이나 일몰이 연장되다가 폐지되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투자확대 효과보다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효과만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
- 이번 제도는 일몰조항이 없어 특정 시점에서의 투자 증가 유도보다 전반적인 투자 증대를 도모하고 있지만, 투자지원은 한시적일 때에만 효과적이라는 국내·외 연구결과와 맞지 않고 당기 분 공제율에 투자 증가분 추가공제라는 혼합형 방식도 어정쩡

- 투자지원 대상선정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다수의 시설·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단순·일원화한 의미만 있음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강화는 제도도입 목적이 세수증대가 아닌 기업 유보소득을 기업 외부로 유출시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므로 최근 여건을 감안해 환류기준을 **오히려 완화시켜야**
 - 2019년(신고) 기준으로 환류세제 적용 전후 실효세율이 0.24%p 높아진(18.8% → 19.1%) 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지 못한 조치
- 고용 창출, 생산성 측면에서 개선여지가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단순히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무분별하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기업 설립 연수 등의 **한시적인 조건으로 지원할 필요**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연장, 특허 조사분석 비용의 공제 인정, 벤처 캐피탈 소부장 양도차익 비과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연장, 상생결제 제도의 연장,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완화 등은 중소기업 전용 지원
 - 투자세액공제제도의 확대, 근로소득증대세제 연장 및 확대 등은 중소기업에 대해 더 큰 조세지원 제공
-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은 향후에도 과도한 공제혜택, 여러 금융상품 간 세부담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함
 - 그동안 제기되어 온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 및 금융과세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여러 문제를 개선하려는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므로 지금 당장의 어려움보다 조금 더 큰 그림과 긴 안목으로 점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2020년 세법개정안 온라인 토론회

회의록

회의록

◦이예재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행사 진행을 맡은 국회방송 아나운서 이예재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발제자와 토론자를 비롯한 토론회 진행에 필수적인 인원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행사장 출입자와 청중이 없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 옆에는 큰 화면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 같이 오늘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방송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예재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님을 모셔서 축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윤후덕

예. 예. 안녕하세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윤후덕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토론회를 준비하신 국회예산정책처와 그리고 오늘 토론자로 함께 나서는 고용진 간사님 그리고 류성걸 간사님 그리고 용혜인 의원님 오늘 수고 많으시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세은 교수님 그리고 박형수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발제를 맡으신 임재현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장님과 또 예산정책처의 박명호 추계세제분석실장님께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는 예년의 세법개정안 토론회와는 사뭇 좀 다른 그런 경제적 상황에서 토론회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더 증대되고 있고 또 고통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다 소비와 또 생산이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죠. 정말 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들에게 그 고통은 더 크게 쌓여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

화되고 또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번이나 추경을 하는 등 참으로 어려운 국면에서 국회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경제를 어떻게든 활력을 되찾게 하고 또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마련하느라고 많은 토론들을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세는 우리 삶에 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다 조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조세정책은 우리 경제에 더 활력을 줄 수 있고 또 그리고 서민들을 보호하는 양극화 완화에 또 큰 방책이기도 합니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또 중점으로 뒀고 투자에 소비,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목표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세법개정안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의 의원님들도 많은 세법개정안을 내셨죠.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여러 의미 있는 세법개정안을 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토론회가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의 방향을 설계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내일부터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세법개정안을 이제 심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누신 말씀들이 심도 있는 세법, 심도 있는 세법 심의에 큰 도움이 되기를 그렇게 희망합니다.

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이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여러 의견들이 우리 위원회 세법개정안 심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예재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의원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일동 박수)

◦이예재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님 오셨습니다.

(일동 박수)

◦이예재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일동 박수)

◦이예재

그럼 먼저 기념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장님,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께서는 잠시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하는 사람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일동 박수)

◦이예재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께서는 무대에 마련된 단상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는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최병호

안녕하십니까?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사회를 맡은 부산대학교 최병호입니다. 금년도 예산 국회 과정에서 세법개정안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토론회는 금년도 세법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국회심의 방향 등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상호의견을 청취하고 교환하여 수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총 18개 국세 부분에 대해서 의원안 272건과 정부안 16건 등 모두 288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특히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및 소비 활성화, 서민 중소기업 지원,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추고 마련되었습니다. 의원발의안 역시 코로나19 확

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재정의 역할이 전에 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을 하락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세입여건은 악화되는 반면에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적어도 내년까지는 코로나 사태 여파로 세입여건은 상당히 나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세정 운영과, 세정 운영에서는 과세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전통적인 과제 외에도 사회경제적인 애로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된다는 큰 숙제가 놓여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자리를 통해서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의미 있고 생산적인 견해들이 서로 교환되고 토론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토론회를 빛내고자 참석해 주신 여러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부와 국회에서 두 분의 발제자와 다섯 분의 패널 토론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선 발제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주제 발제를 맡아주신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님 자리 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최병호

제2주제 발제를 맡아주신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일동 박수)

◦ 최병호

다음으로 토론자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 최병호

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 최병호

용혜인 기본소득당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 최병호

다음으로 전문가 두 분입니다. 전문가로서 정세은 충남대 교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 최병호

마지막으로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 최병호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주요 분석내용, 두 가지 주제 발표를 청취한 후에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제약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진 시간이 약 100분 정도인데요. 그래서 시간 제한을 조금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만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발제자께서는 각각 15분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는 10분씩의 시간을 배정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해서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 임재현

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입니다. 금년도 정부 세법개정안의 추진과정 및 기본방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세부담률을 보시면 한 약 20% 정도 수준이고요. 상승추세에 있지만 OECD 국가의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국민부담률도 마찬가지고요. 세목별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3대 세목으로서 가장 많은 세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내년도 국세 수입 예산은 일단 282.8조원으로 측정을 한 상태입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으며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내용을 금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기본방향은 첫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포용, 상생,

공정 기반을 뒷받침하는 목표하에 첫째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둘째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 공정 강화, 셋째 조세 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조성을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부분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인데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R&D, 생산성 향상 시설, 에너지 절약, 환경보존 시설 등 9개의 시설별로 투자세액공제가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투자의 공제율이 다르고 요건이 다 달리 되어 있는 것을 정부는 이번에 투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전부 통합해 가지고 단순화하면서 재설계했습니다. 그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상자산인데 종래에는 특정시설을 열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개정안에는 토지, 건물, 차량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하곤 전부 지원대상이 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고요.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1, 3, 10%로 하되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2% 포인트를 우대하도록 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법인세 분야에 있어서 각종 세액공제와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이 있습니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에 각종 세액공제를 받는데 당해 연도에 못 받으면 그다음 연도 이후에 이월공제

를 받을 수 있는데 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를 했고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 외국에 납부한 거는 이중과세 조정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월공제 기간이 5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짧은 편이어서 10년으로 연장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기업이 결손금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 이후에 이익에서 공제 가능한데 이것도 다른 나라 예를 감안해서 10년에서 15년으로 하되 특히 이 부분은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금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15년으로 늘리도록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주류산업 규제개선입니다.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하고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서 주류업체가 다른 업체의 주류제조 시설을 이용해서 위탁 제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OEM을 허용하는 등 몇 가지 규제개선 조치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해서 일단 정부안에는 SOC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모 인프라 펀드 세제지원이 들어있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 1억원 한도로 14% 분리과세하는 안이 들어있고 이거에 더해서 한국판 뉴딜 펀드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제지원하는 안이 지금 의원발의되어 있고 조세소위의 논의를 거쳐 가지고 심의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비활력 제고 부분입니다. 금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인상을 했어요.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도 2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혁신

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부분입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다들 잘 아실 건데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증권거래세 폐지 인하 주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23년까지 0.1% 포인트를 인하하되 일단 내년에 선제적으로 0.02% 포인트 인하하고 23년에 0.08% 포인트 인하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현행 0.25%가 23년부터 0.15%가 되도록 그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소득 신설을 통한 금융투자 세제개편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현재는 주식에 대해서는 세법에 정하고 있는 대주주 이외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소액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다 보니까 주식양도를 통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걸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를 하는 걸로 하고 대신 연간 양도차익이 5,000만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로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이 발생하면 연간 다른 주식투자 이익과 다 상계 내지 공제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익이 난 경우에 과세를 하는 것이고 당해 연도에 금융투자손실이 발생하면 5년간 이월하도록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과세표준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 그 이하하는 20% 세율을 적용해서 현재와 같은 세율이고요. 과세방법은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해서 납세자의 추가적인 협력비용이 들지 않도록

록 하되 만약에 증권사가 여러 군데 있다든가 하게 되면 다음 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시점에서 같이 신고납부하도록 해 놔습니다. 현재 다른 선진국들은 모두 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세법상 저희가 학계나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투자자들로부터도 우리나라의 세제, 금융투자 세제가 손익통산 이월공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금융투자 세제가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 신탁세제라고 있습니다. 신탁관계는 기본적으로 위탁자와 수탁자와 수익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신탁법이 개정되고 나서 세법에서 이 부분을 따라 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많이 지적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탁재산에 대해서 대상 스스로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요.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거래형식을 중시하는 부가가치 세제의 특성에 맞추어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가 있어서 종부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을 했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에도 현재는 수익자가 과세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정 요건하에 위탁자를 실제 수익자로 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유턴기업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계속 정

부는 세제지원 등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 3월 달에도 이미 개정을 한 바 있고요. 이번 정기국회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해외 생산량 감축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산자부 유통법에는 해외생산량을 25% 이상 감축하란 요건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만든 세법개정안에는 감축 요건을 아예 없애서 해외공장 규모가 큰 상태에서 일부분을 감면하더라도 감면된 부분만큼 국내생산을 하게 되면 세제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다음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서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식양도 차익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요. 벤처기업 투자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다 2년씩 연장했습니다. 다음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 공정 강화입니다. 먼저 서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현재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자인데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금액이 연 매출 3,000만원인데 이걸 4,8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신규전환되는 현재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하도록 해서 투명성은 유지되도록 했고요. 간이과세 제도를 바꿈으로써 거기에 따른 세액공제 제도도 보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다음에 ISA라고 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습니다. 이게 도입 이후에 계속 이게 좀

늘어나도록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널리 확대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애로 요인을 파악해서 현재는 소득 있는 자하고 농업인만 대상인데 이거를 성인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상장주식도 과세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5년간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선 3년 이상하고 5년 더 이상 늘릴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 제도를 개선했고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적용기한을 2년씩 연장했습니다. 다음 일자리 지원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경단녀 고용에 관한 각종 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적용기한을 각각 1년 또는 2년 연장했고요. 지금 고용증대세제가 있는데 이걸 우대대상과 아닌 걸로 구분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청년, 장애인들은 우대대상에 들어있는데 고령자는 아니었습니다. 고령자도 청년,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우대대상으로 해서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게 되면 1인당 350 내지 430만원 세액공제가 늘어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과세형평 제도입니다. 2017년에 소득세 과표를 조정해서 5억 초과 구간에 대해서 42% 세율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0억 초과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신설했습니다. 이 45% 세율은 거기 외국사례에 보시듯이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선진국들의 최고세율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가상자산 거

래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열거주의로 되어 있어서 이익이 나더라도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은 다른 국가들도 다 과세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입법 미비 상황에서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서 연간 250만원 이상의 이익이 나면 과세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다음 담배에 대한 개소세 부분입니다. 액상의 전자담배에 있어서는 일반 궐련형 전자담배나 궐련에 비해서 세부담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고 유해성 정도를 감안해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규모 조합법인이라고 해서 농수협 단위조합이 있습니다. 그 법인들에 대해서는 일반법인과 다르게 세율을 9%하고 12%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가 있는데 이게 수십 년간 유지되어 있으면서 계속 1년마다 연장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이번에는 매출 1,000억 또는 자산 5,000억원 초과해 가지고 거의 중소기업을 초과하는 규모의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정상 과세하도록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조세제도 합리화 부분입니다.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인데요. 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의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개인 사업자가 소득세율 적용받으면 6 내지 42%가 적용되고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10 내지 한 20%의 세

율이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세무대리인이나 이런 업계에서는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하도록 컨설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법인이 돼도 사적 경비 같은 경우는 다 부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국세청의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09년에 상법 개정돼서 법인설립이 간소화됐고 그래서 2010년 대비해서 19년 지금 보면 법인설립, 법인의 비중이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만개 있던 1인 주주법인이 현재는 거의 28만개까지 올라가서 상당한 조세회피가 있다고 보고요. 정부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시행령 개정사항에 나와 있지만 처음부터 정상적 기업활동을 하는 법인은 전혀 대상이 아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을 어렵게 한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다 대상에서 빠진다. 그리고 이게 2년간 유예를 할 수 있는 그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2년 이내에 투자, 고용, R&D나 채무상환을 해도 그래도 또 기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되는 부분은 추가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일단 세수 중립적으로 투자유인 효과가 강화되도록 재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을 했는데요. 현재 법인세법과 상속세법, 소득세법에서 공익법인과 관련된 규정 명칭 자체가 법정지정, 법정지정기부금단

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공익법인, 성실공익법인 등을 다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해서 공익법인 등으로 명칭을 통일하면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발행주식총수 5% 초과보유 공익법인은 매년 신고하도록 했는데요. 현재는 5년간, 5년마다 한 번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사업에서 사업자들이 수입할 때 부가세 관련해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현재는 수입자의 착오, 경미한 과실 등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발급해 주는데 이것을 특별한 별책 사유나 부당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발급하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요. 맨 밑에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국세통계센터에 가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많은 학자분들이 국세통계센터에 가지 않고도 연구실에서도 얼마든지 표본자료 받아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676억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8월 달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증부세, 양도세 강화 부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부담 귀착을 보시면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 부담이 1.9조원 늘어나고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1.8조원 감소하는 결로 설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병호

예. 임재현 실장님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주어진 시간 내에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표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주요 분석내용에 대해서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 박명호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입니다. 오늘 발표내용과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2021년도 세입전망을 개관하고 다음에는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1년도 세입전망입니다. 세입전망 결과의 소개에 앞서 경제여건을 살펴보게 되면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2020년 올해에는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방 위험도, 하방 위험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생산인

구가 급격히 줄고 노년 부양비가 급격히 느는 매우 빠른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잠재성장률 또한 중장기적으로 지속 하향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전망에 근거하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세입여건은 지출수준을 따라가기 힘든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정책처는 2021년 총수입을 정부 세입예산안인 483조원보다 2조원 하회하는 481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수입의 구성을 보면 국세수입은 정부의 282.8조원보다 1.9조원 낮은, 아 높은 284.7조원으로 보고 있고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의 합인 국세외수입은 3.9조원 낮은 196.3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2021년 국세수입이 2020년 전망치인 280.9조원보다 1.4%만 증가한 284.7조원으로 전망합니다. 이처럼 경제활력 저하로 국세수입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2018년 그리고 2019년 세수 실적 수준인 293조원대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우선 정부 제출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의 특징을 소개하고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주요 세목별 분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소비활성화 및 서민 소상공인 지원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국회의원 발의의 세법개정안은 정부안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수준의 세제개편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 개편안은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0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전망해 보면 누적법 기준으로 향후 5년간 6천억원 정도의 세수증가가 기대됩니다. 이는 소득세 측면에서 최고세율 구간 신설 및 주식양도소득 과세확대 영향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7.4조원 증가하는 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세목 등에서 세수가 6.8조원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세 부담 귀착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향후 5년간 서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5.1조원 감소하고 고소득층 및 대기업의 세 부담은 9.1조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소득층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증대시키는 최근의 조세정책 방향과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기조를 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세목별 세법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20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마련이 눈에 띕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안은 금융세제 선진화 조치의 일환이며 자본이득 과세체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다만 현행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금융투자소득을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함으로써 과도기적 정책대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의 재원확보 기능이 중요해지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병행하여 순세수가 마이너스임에 따라 세수 중립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할 것입

니다. 특히 금융상품 간에 예를 들면 주식채권 대 파생상품 간 그리고 배당 등 기존 금융소득 과 금융투자상품소득 간에 과세상 차별은 향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이번 소득세 개편안에서는 최고세율 구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에 대해 기존 42%에서 45%의 명목세율로 과세함에 따라서 실효세율이 근로소득세 측면에서는 0.6% 포인트 그리고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1.7%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초고소득층 중심의 높은 소득세 세수집중도 그리고 빠른 실효세율 인상과 그리고 높은 면세자 비중은 향후, 향후 세제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다음은 법인세 측면입니다. 법인세 측면에서는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한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이번 세법개정안이 다양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단순화, 효율화를 추구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 대응 목적으로 투자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인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아쉽게 다가옵니다. 만일 경기 대응 목적이라면 감면대상 투자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한시성을 전제로 보다 과감한 지원이 더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민간 부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이 당면한 불확실성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목을 끄는 개정안은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방안입니다. 동 개편안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설립에 따른 조세회피 또는 탈세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대응방안으로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정부가 제안한 대응 방식은 지분을 조정을 위한 명의신탁 문제나 사후환급 등에 따른 조세운용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또한 동 제도는 환급을 전제로 한 미실현 이득과세임을 고려할 때 해외 유사 제도 분석 등을 토대로 과세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측면으로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 납부면제 기준금액의 인상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겨있습니다. 동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이과세자 비중은 기존의 27.8%에서 31.1%로 그리고 이중 납부의무면제자 비중은 22%에서 25.3%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간이과세 관련 기준금액이 거래투명성 제고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고정되어온 점과 코로나19로 영세자영업자의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공이라는 간이과세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보다 세분화하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경기 대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다 투명하게 집행 가능한 직접 지원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개별소비세 측면입니다. 개별소비세 측면에서는 액상

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고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개편안이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유사 담배와 기존 담배 간의 과세상 차별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과세대상 시행령의 시행령 위임, 과세대상의 시행령 위임은 과세요건 사항의 하위 법령 위임에 해당한다는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담배에 대한 정의 자체를 확대하는 의원발의안들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은 금번 세법개정안에서 특별히 주목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세기본법 개정입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빅데이터 활용 방안 및 증거기반 정책수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며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그리고 조세정책연구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다만 표본자료 공개세목을 소득세에 한정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며 향후 논의과정 속에서 세목을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 빅데이터 활용연구 및 국회 내에서의 의정활동을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정책처가 의안비용추계 등 소관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예외기관에 예산정책처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세지출 현황과 정비효과를 살펴보면 조세지출 규모는 19

년 49.6조원에서 20년 53.9조원, 21년 56.8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이미 개정되었거나 정부 개편안에 따라 개정될 조세지출 항목들이 세수효과를 보게 되면 향후 5년간 4.3조원의 세수감소가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를 통한 충분한 재원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경기여건을 감안하는 가운데 적극적 관리대상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항목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입니다. 정부의 중장기 전망과 예산정책처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매우 큰 폭의 재정수지적자가 역사상 유례없이 지속될 것이고 비우호적인 인구 및 경제구조 변화가 더해져서 국가채무비율은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결과 국가재정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런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측면에서 중장기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성장률 둔화 추세 및 지출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세제 측면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제도개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향후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장기 재정전망과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계획의 연계를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로 향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보험료

의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할 때 조세정책의 재량권 및 운신의 폭은 점점 축소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 부담이 아닌 국민부담의 관점에서 조세당국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최병호

예. 고맙습니다. 두 분 실장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측의 주제 발제에 대해서 의원님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고용진 간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부탁드립니다.

◦ 고용진

네. 임재현 실장님 그리고 또 예산정책처의 박명호 실장님 발제 잘 듣고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저한테 10분 정도 시간을 주신다 그러셨죠?

◦ 최병호

예.

◦ 고용진

네네. 몇 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그러는데요. 먼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 중에서 아마 일반 국

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그런 개정 내용인데요. 2023년도부터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고 주식거래세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해서 최종적으로는 0.15%, 2023년도에 0.15%까지 낮추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정부의 조세 기조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일부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장기투자 우대세율 지원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장기보유에 따른 그런 세제혜택이 지금 없기 때문인데요. 공매도라든지 단타 매도 등이 굉장히 횡행하고 있고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이런 시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에도 이광재 의원이나 양향자 의원, 또 김병욱 의원 등이 이러한 바로 장기투자를 우대하는 우대세율에 관련된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 이자배당 단기 자본이득은 종합과세를 하되 장기 자본이득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선은 1년인데요.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면 세율이 높은 종합과세가 적용되지만 1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투자수익 금액에 따라서 낮은 비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미국은 주식을 단기로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장기보유 시에 특별 공제

혜택을 준다면 경영권 있는 대주주에게 감면 효과가 집중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에 낮은 세율로 우대하는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런 다각적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임재현 실장님 좀 말씀주시고 또 박명호 실장님도 견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뭐 두 분 다 발표에서도 가장 핫한 이슈로 하나 지적이 된 게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인데요. 뭐 저도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아주 뭐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개정안이라는 그런 비판이 거셉니다. 말씀하셨지만 도입 취지는 소위 조세회피를 위해서 개인사업자로 자꾸 전환하는 법인이 많아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둘 수 없고 칼을 들이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개인유사법인이 많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거의 가족관계로 엮여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자금조달이라든지 경영도 어렵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초과유보소득에 대해서도 뭐 그분들 얘기는 “실질적으로 개발이나 미래투자 등을 위해서 축적되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이런 용자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무재표 장부상에 있는 거지 실제적인 유보소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재 뭐 우리 기재부에서도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길 듣고 이후에 들어가서 개선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세 가지를 밝혔는데 뭐 1번, 2번은 뭐 기존에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빠지는 것이 소위 이제 수동적 소득을 얻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취지하에 유보소득 중에서 당기 소득,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하거나 부채상환하거나 뭐 R&D를 위해서 지출, 적립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유보소득이 있는 데에 대해서만 하겠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적극적인 법인운동을 하고 있는 곳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하고요. 뭐 이자소득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지 이런 수동적 소득을 올리는 법인들이 올리는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들이 타깃이라면 이 업종에 대해서만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도소매나 제조업체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다 증빙하게 하고 계획서를 내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박명호 실장님 자료에도 보면 조세 운영 비용도 증가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부작용이 생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기재부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

막으로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공모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에 한해서 배당소득이 발생했을 때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4% 원천징수로 끝내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자산시장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민들이 쉽게 참여 가능한 공모 펀드에 혜택을 부여해서 펀드를 확산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모 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이 14%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세제혜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소득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만 수혜자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또 뉴딜 인프라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뉴딜 인프라 펀드에 2억원 한도 내에 투자한 것에 대한 배당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9%로 분리과세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더 개정안보다 유형도 확대되고 과세혜택도 늘어났습니다. 이후에 또 우리 같은 기재위의 박홍근 의원이 당정협의를 거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 이후에 발의된 의원들, 의원안들이 모두 이

런, 모두 펀드의 유형 확대와 세제지원도 이제 대폭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까지 과세형평 차원에서 고소득자의 과도한 세제혜택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고소득자가 공모 펀드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정책이 일관성 측면에서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국민한테 어떻게 세제지원이 갈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또 그러면서 뉴딜 펀드를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또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당정협의안 같이 세율을 좀 낮춰서 투자요인을 더 높이는 것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병호

예. 감사합니다. 시간 정확히 지켜 주셨는데요. 크게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기투자 우대세율 제도 도입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초과유보소득에 대해서 배당 간주하는 과세제도 도입 이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모 인프라 펀드의 분리과세 부여하는 특례가 가지는 어떤 과세형평성 상의 문제, 세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발제자분들께 따로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토론입니다. 류성걸 간사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예.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입니다. 우리 먼저 총론 파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수 관련해서 보면 2018년도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4년간은 지금 세수가 계속 급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수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경제 동력이 약화됨에 따라서 저성장국면에서 코로나라 하는 외부 요인까지 합쳐져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그런 세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시장을 왜곡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법개정안 관련해서 첫 번째 문제점은 세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을 조달하는 게 본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2021년도의 총지출 내년 예산안을 보면 555조 8,000억인데 총수입은, 총지출은 45조 3,000억이나 증가하는데 총수입은 1조 2,000억밖에 증가를 안 합니다. 결국은 통합재정수지가 계속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국세 쪽을 보더라도 국세감면 조세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수는 줄어들고 세출은 늘

어나니까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좀 전에 말씀하셨, 말씀드렸던 통합재정수지뿐만 아니라 관리재정수지가 점점 커지고 결국은 국가부채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법개정안에 어느 정도 정부가 굉장히 고민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세제와 조세제도의 기본원칙과 기준은 지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뭐냐면 조세부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평하게 돼야 되고 또 자원 배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왜곡되지 않는 효율성 차원에서 시장에 왜곡을 주지 않아야 되는 그런 큰 두 개 축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이러한 큰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결국은 뭐냐 하면 낮은 세원,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큰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세법 개정안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세목별로 봐서 지금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42%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억 이상, 10억 초과에 대해서 과표 10억 초과에 대해서 45% 구간을 새로 최고세율 구간을 또 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세형평성이라든지 또 자원배분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율은 낮게 또 세원은 넓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결국 이게 보면 몇몇 부자, 물론 이제 기재부 추산에 의하면 최고세율 대상이 한 1만6,000명 정도 되고 세수증가가 한 9,0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보면

38.9%입니다. 거의 40%가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에 조세형평성이라든지 또 국민경제에 미치는 디스톨션, 왜곡에 관련되는 부분이 검토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국 우리나라의 전체 과표구간을 OECD 관련해서 통계를 보면 과표구간이 제일 많은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에 구간을 지금 보니까 룩셈부르크는 뭐 참 굉장히 많습니다. 19개 구간. 스위스, 멕시코가 11개 구간. 우리가 지금 8개 구간으로 세 번째 많은 그런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세 기본원칙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 관련해서입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습니다. 법인세 구간은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4개 구간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 상으로 또 학문상으로 입증된 사항이고 한 사항입니다만 세율이 높아지면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공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율을 자꾸 높여서 투자자를 왜곡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고 또는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미 많이 이야기됐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이미 세법이 개정이 되었고 시행 중입니다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세법이 개정되고 또 임대차 관련되는 법이 시행 중입니다만 과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습니까? 결국은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

도 말라는 이런 형태의 증세 대책에서 바라본다면 도대체 조세원칙에 맞느냐는 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조특법 관련된 사항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조세지출 관련된 사항이 3년 연속 지금 법정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나면 조특법이 좀 표현을 좀 과하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누더기처럼 돼 있는 조특법이 돼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감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누더기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특법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 소득세 사실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게 처음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국제적으로 맞느냐. 제가 국제적인 사례를 찾아보니까 일본의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 개인지주회사세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간주배당이 아니라 배당으로 간주해서 개인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인에다가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세금은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세금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조세소위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과연 이게 맞는 거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식양도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관련해서는 많은 토론

이 있었고 또 앞으로 토론이 있을 겁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지난번에 대주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대로 10억원을 유지하고 한다 라고 정부에서 지금 또 당정협에서 아마 여당과 합의가 됐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합산이라는 현대판 연좌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도 생기고 또 세법에서 어느 세법에서도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 개인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까지 기재부를 포함한 기재부에서 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이라고 낼 때에 그전에는 세법개정안이 아니고 세제개편안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VAT, 부가가치가 1977년도에 도입을 한 이후에 세제개편다운 세제개편은 사실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좀 강하게 표현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만 세법 자체가 그때그때 정권 또는, 물론 위기를 극복하고 또는 관련되는 사항을 경제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원칙과 기준을 좀 어겨가면서 이렇게 세법개정안을 계속 발표하다 보니까 세제개편을 근본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율은 늘어나는데 세입에 관련되는 사항을 조금씩 뭐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제를 개

편해서 증세를 하면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가면서 결국은 국가부채, 국가채무가 늘어나서 그 부담을 후세에 늘리는 그런 형태의 단기 미봉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병호

예. 류성걸 의원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선 재정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이라는 데서 총론적인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요. 소득세와 법인세에 관해서 과표구간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 그리고 세부담이 다양한 시장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지적해 주셨고 조세지출 관련해서 조특법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이 부분은 앞에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관한 지적 여러 가지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함께 모아서 발제자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토론입니다. 다음 토론은 용혜인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 용혜인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세법개정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사실 제가 한 지난 6개월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명 있는

정당의 의원이지만 외롭다는 생각을 잘 안 해 봤었는데 최근에 각종 세금과 관련된 논의들을 하면서 ‘아, 조금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주장하는 당의 이제 의원으로서 사실 기재부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또 기재부와 의견이 같은 또 재미있는 경험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잘 이 정기국회에서 풀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천, 네. 찢끔 핀셋증세로 감추지 못하는 보편감세의 연장이다 라고 좀 보여줍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감세 기초의 유지 및 확대를 좀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찢끔증세를 일부 좀 가미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투자세액 공제제도 등 조세지출의 유지강화 그리고 증권거래세 인하, 자영업자 간이과세 확대 등 이것들이 감세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를 45% 초과 구간 설정은 찢끔증세의 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의 도입은 증세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주식양도소득 기본공제 5,000만원 그리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허용, 2단계 단일세율 적용되는 분류과세 등의 제도설계로 실질적으로는 감세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코로나 경제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시대의 첫 세법개정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이 정부의 조세재정 기초의 전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계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2020년 세법, 이번 세법개정안은 수출주도 성장이라는 경제모델에 의해서 틀 지워지고 글로벌 신자유주의 감세 경쟁의 수용에 의해서 공고화된 현재의 조세 제도를 변화시킬 의지가 현재 재정당국과 정부에게서는 좀 잘 보이지 않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4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던 뭐 제한적인 과세 강화조치마저도 이제 거대한 정당들의 일치된 감세 요구 동맹에 의해서 좀 좌절되고 굴절되는 현실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다수를 증세의 수혜자로 만들고 이로써 증세정치의 활로를 여는 접근만이 비과세감면 제도의 비대한 발달과 낮은 조세부담률 그리고 빈약한 재정지출과 낮은 복지수준의 이 쳇바퀴 경로를 벗어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재정건전성 그리고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들, 논란들이 많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증세에 대한 이야기가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세제를 좀 간단하게 평가해 보자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부분을 1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다 보니 좀 이렇게 문제점

들만 나열하게 되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상장주식 기본공제 5,000만원은 좀 너무 과하다. 그리고 자가당착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산정책처에서 상장주식 5,000만원 기본공제가 조세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좀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투자상품 간의 투자유인을 동등하게 제 공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기본공제 5,000만원은 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만 월 등하게 우대한다는 점에서 손익통산을 도입한 취지의 자체와 좀 모순된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내의 조세 중립성뿐 만 아니라 종합소득,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 범주와의 조세 중립성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00만원, 근로소득 5,000만원은 상위 16%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실효세율이 대략 6% 정도 되고요. 근로소득 상위 16% 정도에 속하는 이들도 최소한 연 3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5,000만 원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흥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제도 안착 이후에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상장주식 과세대상자 확대가 무산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비과세감면을 바로 잡는 것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소한 공제액을 앞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로드맵이라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세회피 방지 규정 도입이 필요한데요. 예,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허용이 저는 일정 부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제도들이 악용돼서 부당한 조세회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세회피 방지책이 함께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매매 규정과 스트래들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은 미국 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1세기 전인 1921년에 도입돼서 꾸준히 보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정감사에서 이런 질의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님께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회 논의의 과정에서 요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데 이제 이미 논의에 들어간 상임위 세법개정안 논의 전에 법안을 발의한다는 게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요. 기재부가 안을 준비해서 제시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세제실장님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세지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세지출 뭐 증가율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고 '법정한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그리고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들 수 있는데요. 통합투자 세액공제 같

은 경우는 2021년 적용기한 종료 예정이었던 여러 가지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통합해서 통합투자 세액공제 제도로 재연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에 투자세액 공제 제도 중에 뭐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과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조세감면의 90% 이상의 혜택을 받아서 대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지나치게 떨어뜨린다는 제도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생산성 증대나 고용창출에 기여했다라는 설득력 있는 분석도 사실은 지금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몰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해서는 1999년 도입 당시에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 사용하고 계시고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역시 이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소비 진작을 이유로 공제 한도를 좀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좀 대체적인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 공제 한도 인상에 따른 조세지출이 2020년 올해 대비 올해는 전년 대비 10% 그리고 2021년에는 올해 대비 27.8%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6,9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조세지출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소득세율 45% 초과 구간 신설로

9,000억원 세수효과가 난다고 했을 때 이 세수효과의 77%를 잠식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임대주택 문제가 있습니다. 네. 다주택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택분 종부세에서 법인에 대한 세율 상향과 기본공제 폐지 등이 담겼습니다. 종부, 법인에 대한 종부세 혜택이 법인을 이용한 다주택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좀 일정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부분이 이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입니다. 저희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과세표준보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과세표준이 훨씬 더 크다 라는 것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은 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폐지될 때까지 조세지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시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초과유보소득 배당 소득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자면, 네. 반발에 직면한 기재부가 또다시 수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뭐 수동적 소득이 전체 수입의 50%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정부수정안은 불로소득만 아니라면 법인을 이용한 소득세 회피를 허용해 준다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가 이 개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 라고 보여지고요. 심지어

어 뭐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장도 “소득세를 포기하려는가.”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정안 제시가 소득세를 포기한다는 비판까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세소위에서 의견을 내고 또 많은 동료 의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재부에서도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병호

예. 감사합니다. 용혜인 의원께서는 전체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을 ‘감세기조의 유지 혹은 확대에 핀셋증세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문가 두 분의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세은 충남대 교수께서 10분간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 정세은

예. 올해 코로나,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로 인해 한국경제는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러한 단기적인 대응책이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장기적인 과제라고 하는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 등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해결방안에 어떤 장애물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

문에 단기 목표가 예를 들어 조세기반을 위축시킨다거나 조세정의를 훼손한다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정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이나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를 도입한 것이나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 법인을 활용한 투기 근절 방안 등을 도입한 것들은 모두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조세정의 취지에도 맞고 세원확대 증세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자산시장에서의 과도한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세제개편들이 대규모의 증세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서 외환위기 이후에 소득양극화와 자산양극화가 심각해진 한국경제 현실을 소폭이나마 교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향후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후에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증세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일부 이제, 뭐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국민들이 조세저항을 할 수도 있지만 일부의 국민들은 조세저항이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거꾸로 ‘현재의 조세체제가 정의롭지 못하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한다라고 생

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산투기 혹은 자산 자산으로부터의 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데도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하지 않으면서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으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거나라고 하는 그러한 정의롭지 못한 조세체계에 대해서 다수의 저항이 있는, 저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국민들이 세금을 올리면 저항한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정의롭고 이 증세를 통해서 복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동산 관련된 보유세 법인 투기 근절 방안 등등이고 등등입니다. 자,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정의를 훼손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뭐 경제위기 와중에 여기 슬쩍 들어와서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입니다. 정부가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합하고 단순화하고 뭐 그다음에 위기과정을 맞이해서 이것을 좀 확대한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역사를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 투자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없애왔던 바로 전 정부에서도 없앴고 없애는데 힘을 보탰던 것이 바로 현재 여당이고 이것이 현재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상황에서 슬쩍 다시 끼워져서 들어

올 뿐 아니라 더 규모가 커졌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주는 이유는 투자를 하면 기업이 세수를 세금을 낮춰주면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면 고용이 창출되고 이러한 생각들로 자꾸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투자를 해서 고용이 느냐라는 것도 밝혀진 바가 없고 우리나라가 지금 로봇화가 선진국들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를 하는 것이 고용을 오히려 대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가 많이 되어 왔고 그리고 사실 또 세금혜택을 준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가? 기업이 살아나가려면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다 기업의 의무라고 생각할 때 그냥 투자를 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그러한 결과만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 투자세액공제제도이고 그러한 점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것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 왔고 실제로는 고용이 있는 경우에만, 고용하고 연결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갑자기 이것이 그냥 다 통합돼서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거기다가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더 공제를 주는데 사실 신성장 기술 사업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브로드하게, 광범위하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대기업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정부 들어와서 대기업에 대해서 뭐죠? 법인세율을 올려왔던 올렸던 것 그것이 취지가 무색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통

합투자세액공제제도는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문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취지에 100% 동의합니다. 부동산 이런 뭐 수동적인 투자를 하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주변에도 많습니다. 이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세하고 소득세의 세율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서 차제에 좀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한국적인 현실 즉 처음 창업할 때 가족의 자본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국적인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혹시나 우려하는 그러한 업종이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규모 법인들까지도 다 해당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우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령으로 넣기보다 본 법안에 좀 정확하게 좀 넣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이 들고 명칭도 좀 바뀌야 되지 않겠는가, 배당간주 신설이라고 하는 것이 조세회피 등을 방지를 위한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셋째로는 공익법인 관련 상증세법 개정안도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개정안 같은 경우에 뭔가 공익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의무를 부과한 않은 채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

화가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면 의무지출을 1% 보다는 2% 수준으로 더욱 상향 조정하는 것이 취지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올리는 것으로 개편안이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이 간이과세 제도가 문제가 좀 많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와 같이, 같이 활동을 하는 일반과세자, 대응하는 일반과세자의 뭐죠? 탈세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넓혀서는 안 된다,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이과세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병호

예. 고맙습니다. 정세은 교수님께서서는 전반적으로 이번 세제개정안에 대해서 세법개편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시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라든지 개인유사법인, 아 이 부분은 참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단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부정적이시고 또 공익법인 의무지출에 관해서도 좀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 박형수

네. 박형수입니다. 예. 우리 자료집 69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조세재정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우리 재정의 역할 강화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조세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날로 커지고 있는 우리 재정의 역할에 부응하는 정말 중기적인 세제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 류성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아주 피스밀한 어떤 세법 개정 가지고 우리나라 재정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상황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좀 중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제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를 염두에 두면서 단기적인 위기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우리 정세은 교수님 의견에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포괄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우리 조세의 세 가지 기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재원조달, 소득재분배, 성장촉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금년도 정부 세제개편안, 그리고 다른 분들은 별로 언급은 하지 않았습시다만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면서 같이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우리 자료가 또 하나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계획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안 보다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계획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자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어서 더불어서 우리 비판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평가는 정말 2년 연속으로 세입확충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세법개정안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또 제가 세입확충 필요에 부응하지 못한 세법개정안이라고 하면서 대안들을 제시를 한 바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좀 입은 아프긴 합니다마는 또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부터 적어도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24년까지 5년 연속으로 재정적자가 100조원을 넘는 정말 매년 재정적자 100조원, 국가채무 100조원 증가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에 가장 중요한 기능인 지출확대에 필요한 재원조달 기능이 정말 마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기 시작하면 정말 이러한 세입부족 문제는 정말 시급하게 해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재정학에서는 높은 복지수준, 낮은 조세부담, 작은 국가채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 가지 좋은 재정정책의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세 가지 재정정책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재정의 트릴레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머지 두 개는 추구할 수 있지만. 과거의 우리 정부는 그중에서 높은 복지수준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은 조세부담과 작은 국가채무라고 하는 어떤 재정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 특히 여당 쪽에서는 작은 국가채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2016년에 36% 정도였는데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24년에 60%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우리 국방지출이나 경제지출을 줄여서 복지지출을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늘어나는 복지지출의 증가 속도를 정말 적절한 수준으로 조금 제어를 하면서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국가채무수준 그리고 완만하고 지속적인 증세를 균형 있게 복지지출 재원 조달하는 방안으로 삼는 등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재정정책의 목표의 재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복원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나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집 72페이지와 73페이지에 적시해 놓았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의 평가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서 많은 우리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그 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재정학연구라고 하는 논문에서 제가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조세 및 복지지출에 의한 우리 지니계수 개선효과, 소위 말하는 소득재분배 효과라고 하는 거 자체는 선진국은 물론이고 평균 정도되는 개발도상국보다도 못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재분배 효과가 큰 우리 현금급여, 또 소득세와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작기 때문에 또한 또 현물 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책 규모는 되는데 정책의 효율성,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타게팅해서 수혜가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의 제도적 설계가 미흡해서 소득재분배에 기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제 평가였습니다. 특히 이제 소득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누진도보다는 세부담의 규모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이 아니고 각종 공제 및 면제제도를 과감하게 축소해서 소득세의 전반적인 부담 자체를 끌어 올려야 소득 조세의, 우리나라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을 한 반면에 각종 소득세에 관련된 공제 면제제도를 좀 늘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편 또 우리 소득재분배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와 같은 자산과세와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 연구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의 이러한 세제개편안이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는 실패를 했다.’ 이런 평가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가는 일시적인 경기 부양은 가능하겠습니까 하는 성장촉진을 기대하기는 무리지 않나라

고 하는 평가입니다. 앞에서 다들 지적하셨듯이 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소비를 활성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미래의 소비를 좀 앞으로 당겨서, 당겨서 경기를 좀 부양하는 어떤 그런 효과는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어떻게 보면 2019년부터 3년 연속으로 우리 법정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조세지출 증가를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성장촉진 효과 또 경제체질 개선효과는 정말 기대하기는 좀 요원할 듯합니다. 우리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면 앞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신설 문제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십 몇 년 동안이죠? 이십 몇 년 동안 유지를 해 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사례 그리고 기업을 위한 기업투자를 위한 세제지원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한시적일 때만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게 국내외 많은 우리 재정경제전문가들의 연구결과임을 감안할 때 정말 연평균 한 1조원에 달하는 조세지출 규모로 도입되는 이 통합투자세액공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업들의 신규투자 유발을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일몰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일시적인 지원이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약간 또 지원의 포물러가 어정쩡하게 당기분 공제율에다가 또 투자증가분 투자, 추가 공제라고 하는 혼합형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시적인 투자증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라 투자를 좀 근본적으로 기업들의 투자의 전반적인 수준 자체를 높이려고 하는 정책인지의 정책목표 자체도 약간 모호해 보입니다. 우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뭐 이름이 바뀌어서 요즘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과도한 기업유보소득을 기업 밖으로 이렇게 유출을 시켜서 경제 우리 선순환을 만들고자 하는 게 당초의 제도 목적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경제 기업투자여건이 굉장히 기업들이 고용창출이라든지 투자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여건하에 있는데 오히려 이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완화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의 정상적인 고용과 투자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오히려 정부는 지금 이걸 강화시키는 거로 가고 있단 이야기죠. 그 말씀은 뭐냐면 원래 이 제도를 세수증대의 목적으로 도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으로 고용과 투자환경이 악화되면 그 악화된 정도에 맞춰서 완화시켜 줬다가 그게 정상화되면 다시 또 강화를 시키는 어떤 이러한 탄력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또 기업들의 고용투자상황에 맞게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경제 구조조정이 지금 여러분들이 인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더 빠르게 이제 그게

가시화가 될 것입니다. 정말 고용창출 생산성 측면에서 정말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게 또한 중소기업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단순히 기업 규모가 작다라는 이유만으로 좀 세제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우리 자료집에 적시를 해 놔습니다만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설립 연수 등등 다양한 조건들을 부과를 해서 중소기업들이, 노력하는 중소기업만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세제혜택을 끊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빨리 개선 시킬 필요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방식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은 정말 제가 우리 조세재정연구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정말 수년 동안 고생을 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엄청나게 노력한 분야고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근데 이게 첫 단추 꿰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세제개편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될 길로 점진적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데에 있어서 지금에 취한 우리의 조치가 걸림돌이 되거나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부작용을 유

발해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생각을 우리가 수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몇 년 간 유예기간을 두면서까지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제도 자체가 최근에 과도한 공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상품 간의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우리 세제당국이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다. 우리가 보다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지금에 있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물러설 거는 물러서지만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합리적인 금융세제를 정착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보다 큰 그림인 캐피털 게인 택스를 도입하는 데에 우리가 첫걸음을 떼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제 발언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증세라고 하는 거 자체는 우리 재정적자 문제, 복지지출의 증가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 증세의 속도의 문제인 것이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당장의 증세를 시작할 순 없지만 증세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많이 쌓여있던 우리나라의 세제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점, 앞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조세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그 이해집단들의,

◦ 최병호

예.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 박형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막혀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과거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혀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계속 조세지출을 한 다든지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보다 단순하게 세제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지출에 대한 원활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기적인 세제개편안이 조금씩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예.

◦ 최병호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두 분의 발제자와 다섯 분의 토론자들의 지정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여러 토론자분들께서 다양한 의견도 주시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발제자께서 간단하게 입장이나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해 주실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임재현 실장님께서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3분 정도 내에서 핵심적인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 임재현

예. 의원님들과 교수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세제개편안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는 물론이고 그 이전을 포함해서도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세제개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용진 의원께서 금융투자소득 세제개선 관련해서 장기보유 공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주식양도소득 내지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는 분리과세가 아니고 1년 이내 종합과세에서 페널티를 두고 있고요. 다른 모든 선진국들은 그냥 분리과세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같이 분리과세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의 경우도 장기보유한다고 해서 특별히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장단기 투자를 하는 거는 개인에게 투자행태가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장기투자를 유도하려고 세제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초과유보소득 과세 문제 의원님들, 교수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내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2년간 투자, 고용, R&D, 채무상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도 이 제도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과세가 된다 그러면 그런 사례를 제시하면 얼마든지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실제 정상적인 기업들은 이 제도의 적

용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 세제지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소득자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세율을 인하하면 고소득자는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ISA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걸 비롯해서 많은 감면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투자자들은 그런 데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류성걸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번에 정부가 10억 초과 45% 세율 구간을 만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 세율은 다른 선진국들에 많이 있는 최고세율입니다. 다만 45%가 적용된다면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10억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45% 최고세율이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최고 소득자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명목세율 45%만 보실 게 아니고 과표를 함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세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면세자가 지금 38%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 32.23%에서 연말정산 파동을 겪으면서 38%, 4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8% 낮춰지고 있고 저희가 추산할 때 향후 2~3년 내 적어도 2022년 귀속분 정도는 다시 박근혜 정부 당시의 32~3%로 면세자가 내려갈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면세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 보고 고민을 하는데 면세자란 분이 소득, 근로소득이 있는데 각종 경비를 제외하면 생계비의 어떻게 부족한 근로소득자라고 봐야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소득세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세수효과는 크지 않고 어렵게 하는 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인세 관련해서도 많은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법인, 개인적으로 법인세를 담당하는 사무관, 과장, 국장, 실장까지 10년 정도를 법인세를 했습니다. 근데 법인세율을 인하도 해 봤고 인상도 해 봤는데 아까 정세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증가로 귀착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는 없습니다. 만약에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투자증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저는 2017년에 법인세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라마다 다 다르고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하시고 개인유사법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개인유사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주식양도소득 관련해서 10억으로 유지된 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가족 합산배제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과세대상이 반 이상 줄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산과세 형평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방향에 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혜인 의원님 말씀 많이 주셨는데 가장매매, 스트래들 규정은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좀 전문적이지만 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가 다시 사는 건데 이게 일반적

으로 그냥 건전한 투자행태인지와 구분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 초기에 이걸 도입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조세지출 증가와 관련해서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님들이 항상 저희 정부 안에 대해서 조세감면 한도를 초과했다고 늘 질책을 하십니다. 저희가 매년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근데 정부의 고민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조세감면 노력을 계속합니다, 사실. 계속하고 조세감면안을 가지고 국회에 가지고 오고요. 근데 사실 국회에서는 다시 그게 원상회복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대규모 조합법인 과세특례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일몰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 또 다시 이것도 연장하고자 되어 있어서 정부는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국회에서 좀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부세 폐지를, 종부세 합산배제 폐지해야 되고 조세지출에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은 국감에서 하셨으니까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개인유사법인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정세은 교수님 말씀하신 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저희가 코로나 위기와 경제활력 극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유사법인 관련해서 시행령보다 법률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조세소위 과정에서 저희가 넣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과세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간이과세자 확대는

반대를 해 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거래투명성을 저해해서 과표양성화에 반대되기 때문에 역행하기 때문에 반대했었는데 저희가 고민 끝에 이번에 8,000만원까지 대상을 넓히되 새로 일반과세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를 유지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형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보다 공제 문제 축소로 재정적, 전반적 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10억 최고 구간, 최고 소득자들이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보다 근로소득세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투자세액공제 초과분을 한 것은 전년보다 더 투자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는, 투자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거라 말씀을 드리고요. 투상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는데 이번에 설계한 것은 일단 세수 중립적으로 했고 일부 근로자 요건 등을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에 대해서 규모가 작다고 무조건 지원할 게 아니고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병호

네.

◦임재현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최병호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박명호 실장님 좀...

◦박명호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토론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고용진 의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장기 자본이득과 관련된 혜택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진 세제하에서 양도소득은 다년간에 걸쳐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현 시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단기, 퀵린더 이어서 소득을 끊는 거하고 다년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거하고 그 세부담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보게 되면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집 효과를 완화하는 장치가 일정 수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비교할 때, 미국과 비교할 때 세율이 더 높은 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율이 더 높은 점은 있지만 미국의 장기자본이득과세와 현재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가 유사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

서는 1년 미만의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합산을 하지만 우리는 종합합산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여러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보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토론자분들 중에서 서로 상반된 의견 중에 하나가 최고세율 인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있는 IMF 직원들이나 뭐 OECD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코멘트할 때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장기, 중장기적으로 특히 이제 중기적으로 보편적인 증세가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최고세율을 계속해서 미리미리 올려놓아 버리면 국민적인 동의 또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적어진다. 그러니 보편적인 증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최고세율을 높임으로써 고소득자들이, 최고 소득자들이 더 부담하고 있다. 더 세부담을 진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이러한 식으로 과세 기준적으로 세법개정을 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라는 코멘트를 많이 합니다. 최고세율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지금 시기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세은 교수님께서 간이과세제도 폐지를 주장을 하셨는데 이 간이과세제도라는 거 자체가 영세사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이과세제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간이과세 제도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매출이 50% 이상인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종사업자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계끔 의무화한다 그러면 자료상을 통한 탈세가 더 번성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도 취지에 맞게 업종별 부가가치를 세분화해서 그리고 현실화해서 이제 조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아 조세 보조금으로 작용하지 않고 순수한 납세 편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제도가 운영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최병호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는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세 분 의원님들 중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2분 쯤 정도 드리겠습니다.

◦ 고용진

난 됐어요.

◦ 최병호

예. 그럼 류성걸 의원님,

◦ 류성걸

제가, 예.

◦ 최병호

2분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 류성걸

예. 우리 정부에서 임 실장님 오셨는데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과세 형평성이다, 특히 과표구간을 소득세 지금 현재 7개 구간으로 돼 있는데 최고세율 구간을 1개 더 늘리면 8개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형평성이라는 기준을 제시를 해서 그런 말씀인데 형평성이라는 게 어떤 형평성인지 한번 여쭙보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의 배당소득, 배당간주 소득세를 할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그런 유사한 제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법인세에 추가적으로 부과를 하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는 이것을 배당하는 걸로 간주해서 배당소득세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관련해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법인세를 뭐 택세이션을 전공을 하면서 법인세율 귀착에 대한 관련되는 논문을 썼습니다만 법인세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세율을 낮췄을 때에 투자라든지 또는 전가에 관련된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100% 전가된다는 이론과 또 실제가 있는 반면에 전혀 전가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론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관련돼서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는 단일세율, 플랫 택스 레이트를 한다든지 또는 법인세 세율 구간을 인컴 브래킷을 그렇게 낮추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거를 한번 행정부 차원에서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병호

예. 시간관계상 일단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으면 시간이 너무 지날 것 같아서 이 회의가 마치고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아직 청중석에 많이 앉아계십니다. 특히 참석하신 의원님 중에서 오늘 토론회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에서 재정의 역할과 중요성이 전에 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재정과 조세에 대해서 관심도가 정말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재정학을 공부할 때 배울 때 사실 세제와 재정에 관해서는 주로 이론과 실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 모든 나라에도 실제로 세제를 운영하고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영역이 어느 정도는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정치가 개입을 할 때는 사실은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재정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토론

회를 마련해 주신 국회예산정책처와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발제를 해 주신 임재현 실장님과 박명호 추계분석실장님 그리고 세 분의 의원님과 두 분의 전문가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자리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 고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또 의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 최병호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사람들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사람들 있음)

(“자료가 좋네요.”하는 사람 있음)

(이후 대화 생략)

MEMO

발 간 일 2020년 12월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2020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

